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177-10



2024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4.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목 차 | CONTENTS

I.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	1
II. 협의 대상 .....	7
III. 협의 절차 .....	21
IV. 협의 기준 .....	29
V.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	37
VI.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	45
VII. 행정 사항 .....	55

## ■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신설 제도) .....	65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변경 제도) .....	75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	87
【서식 4】 회신 양식 .....	89
【서식 5】 재정운용계획서 .....	90
【서식 6】 ‘조건부 협의완료’ 성과 평가계획서 .....	93
【서식 7】 긴급사유 소명서 작성 양식 .....	97

## ■ 부 록

【부록 1】 2023년 협의완료(철회·반려·협의종료 제외) 안건(2023.12.31. 기준) ..	101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23.12.31. 기준) .....	136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	148
【부록 4】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	149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	165
【부록 6】 정책영역별 대표성과지표 및 사업내용별 세부지표 예시 .....	176

---

#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 주요 변경사항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2023년)	변경 후(2024년)
협의 대상	<p>II. 협의 대상</p> <p>1. 협의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lt;생략&gt; * &lt;신설&gt;</li> </ul>	<p>II. 협의 대상</p> <p>1. 협의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lt;생략&gt; * 사회서비스 범위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 지원 사업 포함</li> </ul>
	<p>3. 협의 제외 대상</p> <p>&lt;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사항&gt; &lt;생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예산변동)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협의 완료한 동일내용의 사업 중,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내용(지원항목·방식, 지원기간·횟수)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 등만 변동</li> <li>- 국회·의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 '급여액수'만 변경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li> <li>●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업무 등) &lt;생략&gt;</li> <li>- 사회보장시설, 기관, 단체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지칭함</li> </ul>	<p>3. 협의 제외 대상</p> <p>&lt;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사항&gt; &lt;생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예산변동)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협의 완료한 동일내용의 사업 중,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내용(지원항목·방식, 지원기간·횟수, 단가)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 등만 변동</li> <li>- 국회·의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액수'만 변경 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li> <li>●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업무 등) &lt;생략&gt;</li> <li>- 사회보장시설, 기관, 단체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사회보장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지칭함</li> </ul>
<p>고유업무 재정지원 여부에 따른 협의(제외)대상 예시</p> <p>&lt;생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3)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학비, 교육비 등) 지원 사업</li> <li>- (협의대상) &lt;신설&gt;</li> <li>- (협의제외대상)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장학재단(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반복적·정기적 성격의 경상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교육비, 대학등록금 지원 등을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장학재단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li> </ul>	<p>고유업무 재정지원 여부에 따른 협의(제외)대상 예시</p> <p>&lt;생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3)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학비, 교육비 등) 지원 사업</li> <li>- (협의대상) 특정 대상 및 용도를 지정해 장학재단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li> <li>- (협의제외대상)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장학재단(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반복적·정기적 성격의 경상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장학재단 등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li> </ul>	

구분	변경 전(2023년)	변경 후(2024년)
<p>협의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신설&gt;</li> </ul> </li> <li>● 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피해보상/구조지원사업 등</li> <li>☞ 예 : 주택화재·생활안전·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인플루엔자·풍진·A,B,C형 간염·장관염(로타바이러스) 등의 예방접종 지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 보상 지원, 환경영향평가 부적합 판정 등에 따른 건강 피해보상 지원, 범죄예방환경설계(CEOTED), 성매매·성폭력 피해보상 지원 등</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지방자치단체 사업만 해당&gt; &lt;생략&gt;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지원사업 중 지자체 법정배분사업</li> </ul> <p>&lt;기타반려사례 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lt;생략&gt;</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및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항목 확대 포함 시, 협의 대상</li> </ul> </li> <li>● 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피해보상/구조지원사업 등</li> <li>☞ 예 : <u>시민안전보험 가입, 당해 예산 변경(예비비, 추경, 이·전용 등) 사업(차년도 사업은 협의 대상), 질병청 지정 국가 필수 예방접종, 법령 및 법원 판결 등에 의한 각종 피해보상 및 구조지원 사업, 범죄 예방 및 치안대책, 성매매·성폭력 피해 보상 지원</u></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지방자치단체 사업만 해당&gt; &lt;생략&gt;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삭제&gt;</li> </ul> <p>&lt;기타반려사례 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삭제&gt;</li> <li>☞ &lt;삭제&gt;</li> </ul>
<p>신속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b>4. 신속협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초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li> <li>● 요건: 예산액 年2억원 이하 사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사업이 아닐 것</li> <li>*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업집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업.</li> <li>ex) 외래본인부담전액지원사업 등</li> </ul> </li> <li>- 사업내용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li> <li>-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 구조를 반드시 갖출 것</li> <li>- 1인당 수혜액 月 10만원(年 120만원) 이하</li> <li>● 방식: 복지부로 관련 내용 제출 시, 협의 절차 신속 이행(단, 요건 충족 시)</li> </ul>



구분	변경 전(2023년)	변경 후(2024년)																								
협의 절차	<p style="text-align: center;"><b>III. 협의 절차</b></p>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절 차</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사전 컨설팅</b> (협의지원단*) <small>*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smal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한 협의 절차 이행 등을 위해 협의 요청기관이 필요할 경우 사업 기획 및 협의요청서 작성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 진행</li> <li>* 상세절차는 지침 p.22 참고</li> <li>* 정식 협의요청 접수 이후 <b>협의기간 단축 가능</b></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협의요청</b> (요청기관 → 복지부)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청서 및 참고자료</li> <li>·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b>관할 시·도</b>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자료보완</b> (복지부/협의지원단 → 요청기관)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에 필요한 자료의 누락, 보완 필요 시 수정·보완 (보완자료 기간은 협의기간에 미산입)</li> <li>* 보건복지부 또는 협의지원단 담당자가 공문 또는 유선 등으로 요청</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b> (복지부 → 관계부처 (시))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 <u>의견조회</u></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lt;이하 생략&gt;                 </td> <td style="text-align: center;">                     &lt;이하 생략&gt;                 </td> </tr> </tbody> </table>	절 차	주요 내용	<b>사전 컨설팅</b> (협의지원단*) <small>*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한 협의 절차 이행 등을 위해 협의 요청기관이 필요할 경우 사업 기획 및 협의요청서 작성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 진행</li> <li>* 상세절차는 지침 p.22 참고</li> <li>* 정식 협의요청 접수 이후 <b>협의기간 단축 가능</b></li> </ul>	<b>협의요청</b> (요청기관 →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청서 및 참고자료</li> <li>·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b>관할 시·도</b>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li> </ul>	<b>자료보완</b> (복지부/협의지원단 → 요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에 필요한 자료의 누락, 보완 필요 시 수정·보완 (보완자료 기간은 협의기간에 미산입)</li> <li>* 보건복지부 또는 협의지원단 담당자가 공문 또는 유선 등으로 요청</li> </ul>	<b>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b> (복지부 → 관계부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 <u>의견조회</u></li> </ul>	<이하 생략>	<이하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b>III. 협의 절차</b></p>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절 차</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사전 컨설팅</b>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협의지원단 공동으로 <b>광역 권역별 컨설팅 지원</b></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협의요청</b> (요청기관 → 복지부)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협의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접수 및 절차 진행</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자료보완</b> (복지부/협의지원단 → 요청기관)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에 필요한 자료의 누락, 보완 필요 시 수정·보완 (보완자료 기간은 협의기간에 미산입)</li> <li>* 보건복지부 또는 협의지원단 담당자가 행복이음 또는 유선 등으로 요청</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b> (복지부 → 관계부처 및 지자체)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요청사업 중 쟁점이 있는 경우 소관 부처 및 광역 지자체에 <u>의견 조회</u>, 필요시 인접 기초 지자체에 <u>의견조회</u></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lt;이하 생략&gt;                 </td> <td style="text-align: center;">                     &lt;이하 생략&gt;                 </td> </tr> </tbody> </table>	절 차	주요 내용	<b>사전 컨설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협의지원단 공동으로 <b>광역 권역별 컨설팅 지원</b></li> </ul>	<b>협의요청</b> (요청기관 →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협의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접수 및 절차 진행</li> </ul>	<b>자료보완</b> (복지부/협의지원단 → 요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에 필요한 자료의 누락, 보완 필요 시 수정·보완 (보완자료 기간은 협의기간에 미산입)</li> <li>* 보건복지부 또는 협의지원단 담당자가 행복이음 또는 유선 등으로 요청</li> </ul>	<b>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b> (복지부 → 관계부처 및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요청사업 중 쟁점이 있는 경우 소관 부처 및 광역 지자체에 <u>의견 조회</u>, 필요시 인접 기초 지자체에 <u>의견조회</u></li> </ul>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절 차	주요 내용																								
<b>사전 컨설팅</b> (협의지원단*) <small>*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한 협의 절차 이행 등을 위해 협의 요청기관이 필요할 경우 사업 기획 및 협의요청서 작성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 진행</li> <li>* 상세절차는 지침 p.22 참고</li> <li>* 정식 협의요청 접수 이후 <b>협의기간 단축 가능</b></li> </ul>																									
<b>협의요청</b> (요청기관 →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청서 및 참고자료</li> <li>·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b>관할 시·도</b>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li> </ul>																									
<b>자료보완</b> (복지부/협의지원단 → 요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에 필요한 자료의 누락, 보완 필요 시 수정·보완 (보완자료 기간은 협의기간에 미산입)</li> <li>* 보건복지부 또는 협의지원단 담당자가 공문 또는 유선 등으로 요청</li> </ul>																									
<b>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b> (복지부 → 관계부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 <u>의견조회</u></li> </ul>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절 차	주요 내용																									
<b>사전 컨설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협의지원단 공동으로 <b>광역 권역별 컨설팅 지원</b></li> </ul>																									
<b>협의요청</b> (요청기관 →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협의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접수 및 절차 진행</li> </ul>																									
<b>자료보완</b> (복지부/협의지원단 → 요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에 필요한 자료의 누락, 보완 필요 시 수정·보완 (보완자료 기간은 협의기간에 미산입)</li> <li>* 보건복지부 또는 협의지원단 담당자가 행복이음 또는 유선 등으로 요청</li> </ul>																									
<b>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b> (복지부 → 관계부처 및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요청사업 중 쟁점이 있는 경우 소관 부처 및 광역 지자체에 <u>의견 조회</u>, 필요시 인접 기초 지자체에 <u>의견조회</u></li> </ul>																									
<이하 생략>	<이하 생략>																									
<p><b>1. 정책 컨설팅 지원</b></p> <p>● (목적) &lt;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b>1. 권역별 컨설팅 지원</b></p> <p>● (목적) &lt;생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정된 행정인력과 제약된 일정 등을 고려, 개별 지자체 방문 보다는 권역별 컨설팅 방식으로 개편</li> <li>- 권역 내, 또는 인근 지자체 참석이 가능하여 보다 많은 지자체 인력 참여 및 논의 가능</li> <li>- 복지부·협의지원단·지자체 간 유사 사업 등에 대한 토론과 논의 기회 제공</li> </ul>																									

구분	변경 전(2023년)	변경 후(2024년)
협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상)</b>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b>협의 요청 이전 또는 협의단계에서</b> 전문적 정책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수요가 있는 사업 추진 기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li> <li>● <b>(방법)</b> 컨설팅 요청 시 협의지원단을 통해 전문적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신설&gt;</li> <li>- 필요시, 지자체가 개별로 협의지원단에 컨설팅 요청 가능</li> <li>* 협의지원단 연락처 및 이메일 : 044-287-8100 / center380@kihasa.re.kr</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삭제&gt;</li> <li>● <b>(방법)</b> 광역단위 권역별 합동 워크숍 형태로 정책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단위 권역별 컨설팅 별도 일정 수립 및 공지</li> </ul> </li> <li>* &lt;삭제&gt;</li> </ul>
	<p><b>2. 신설·변경 협의요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협의요청)</b> &lt;생략&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요청기관은 (서식1,2)의 양식에 따라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로 공문 제출</li> <li>- 광역-기초지자체 간 사전 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초 지자체에서는 협의요청서 (서식 1, 2) 제출 시 보건복지부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 지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할 시도 협의 총괄부서)</li> <li>*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참조</li> </ul> </li> <li>● <b>(협의요청기한)</b> &lt;생략&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생략&gt;</li> <li>*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p.102)「(9)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참고</li> <li>- 요청기한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li> </ul> </li> </ul>	<p><b>2. 신설·변경 협의요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협의요청)</b> &lt;생략&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요청기관은 (서식1,2)의 양식에 따라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행복이음을 통해 접수 및 절차 진행</li> </ul> </li> <li>- &lt;삭제&gt;</li> <li>● <b>(협의요청기한)</b> &lt;생략&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생략&gt;</li> <li>*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p.98)「(9)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참고</li> <li>- 요청기한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li> </ul> </li> </ul>

구분	변경 전(2023년)	변경 후(2024년)
	<p>에는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협의요청서 제출(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④항)</p> <p>* 긴급사유 소명서(서식9) 첨부 제출</p> <p>* 긴급사유 예시: 아동학대, 자살예방, 임시 보호 등 <u>사회보장제도 도입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등</u></p> <p>- &lt;신설&gt;</p>	<p>에는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협의요청서 제출(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④항)</p> <p>* 긴급사유 소명서(서식7) 첨부 제출</p> <p>* &lt;삭제&gt;</p> <p>- 단, 법정기한 이후에 접수된 협의요청 사업은 본 지침의 협의기간이 적용되지 않음</p>
<p>협의 절차</p>	<p>3. 협의의 진행</p> <p>● (협의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안전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b>60일 이내에 처리</b></p> <p>- (생략)</p> <p>- (신설)</p> <p>- (신설)</p> <p>● (협의절차)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u>관련부처(부서) 및 전문가 그룹(협의지원단*)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통해 협의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최종 협의결과 도출</u></p>	<p>3. 협의의 진행</p> <p>● (협의기간) 일반안전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b>60일 이내에 처리</b></p> <p>- (생략)</p> <p>- 신청된 안전은 <u>협의요청 접수 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u></p> <p>- 법정기한 내 접수된 안전에 대해서는 <u>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결과 또는 쟁점 안전 여부를 안내</u></p> <p>● (협의절차)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u>쟁점안전에 대하여 소관 기관(부처 및 부서), 관련 지자체(기초지자체 사업의 경우 소관 광역지자체 및 필요시 인근 지자체), 협의지원단을 통해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통해 협의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최종 협의결과 도출</u></p>

구분	변경 전(2023년)	변경 후(2024년)
	<p style="text-align: center;"><b>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li> <li>- 조건부 협의완료 : 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 추진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한시적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완료</li> <li>* 사업시행 이후 협의요청기관의 자체 성과평가 등을 기반으로 최종 '협의완료'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요청기관과의 추가 협의 필요</li> <li>● 재협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기준에 따른 사업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추가 협의 진행(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 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요청)</li> <li>- 재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li> <li>- 재협의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li> <li>● 반려 :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요청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대상 아님 :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요청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li> <li>●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li> <li>● 조건부 협의완료 : 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 추진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한시적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완료, <u>일정기한 내 사업 종료 또는 관련 협의 쟁점 수정보완 등의 이행 조건 사업</u></li> <li>* 사업시행 이후 협의요청기관의 자체 성과평가 등을 기반으로 최종 '협의완료'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요청기관과의 추가 협의 필요</li> <li>● 재협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기준에 따른 사업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추가 협의 진행(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 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요청)</li> <li>- 재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li> <li>- 재협의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li> </ul>

구분	변경 전(2023년)	변경 후(2024년)																
협의 기준	<p><b>IV. 협의 기준</b></p> <table border="1" data-bbox="333 379 783 427"> <thead> <tr> <th>법정 기준</th> <th>주요검토 항목</th> </tr> </thead> <tbody> <tr>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td> <td>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⑪ <u>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u> </td> </tr> <tr> <td>〈생략〉</td> <td>〈생략〉</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법정 기준	주요검토 항목	〈생략〉	〈생략〉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⑪ <u>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u>	〈생략〉	〈생략〉	<p><b>IV. 협의 기준</b></p> <table border="1" data-bbox="807 379 1256 427"> <thead> <tr> <th>법정 기준</th> <th>주요검토 항목</th> </tr> </thead> <tbody> <tr>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td> <td>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⑪ <u>〈삭제〉</u> </td> </tr> <tr> <td>〈생략〉</td> <td>〈생략〉</td> </tr> </tbody>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b>사회보장제도 협의 기본방향</b></p> <p>◇ <b>(국가-지자체간 사회보장협력체계 강화)</b>                      제한된 공적 재원이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다자녀, 한부모, 청소년부모 등 사업별로 다양)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p> <p>- 국가-광역-기초 지자체간 효율적 역할 분담방안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제도 운용 내실화</p> <p>◇ <b>(지역간 복지격차 최소화) 지원 규모 및 지원 수준은 기존 유사 사업 有無 및 해당 사업의 지원 수준 등을 고려</b>하되 지역간 복지 격차가 최소화되도록 상호 협의</p> <p>- 지자체간 과도한 복지사업 경쟁을 지양하고 재정력차에 따른 복지 급여 수준의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p> </div>	법정 기준	주요검토 항목	〈생략〉	〈생략〉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⑪ <u>〈삭제〉</u>	〈생략〉	〈생략〉
	법정 기준	주요검토 항목																
〈생략〉	〈생략〉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⑪ <u>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u>																	
〈생략〉	〈생략〉																	
법정 기준	주요검토 항목																	
〈생략〉	〈생략〉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⑪ <u>〈삭제〉</u>																	
〈생략〉	〈생략〉																	
이행 점검 및 후속 조치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참고〉 지자체 사전협의 우수사례 참고 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구분	변경 전(2023년)	변경 후(2024년)												
성과 관리	<p><b>VI.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b></p> <p><b>3. 사업 영향평가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b></p> <p>● (시기) &lt;생략&gt;</p> <p>- &lt;신설&gt;</p> <p>&lt;‘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영향평가 사후관리 절차&gt;</p>	<p><b>VI.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b></p> <p><b>3. 사업 영향평가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b></p> <p>● (시기) &lt;생략&gt;</p> <p>- 다만, 사업 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시점 변동 가능</p> <p>&lt;‘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영향평가 사후관리 절차&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30%;">절차</th> <th style="width: 60%;">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lt;생략&gt;</td> <td style="text-align: center;">&lt;생략&gt;</td> <td style="text-align: center;">&lt;생략&gt;</td> </tr> </tbody> </table>	구분	절차	주요내용	<생략>	<생략>	<생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30%;">절차</th> <th style="width: 60%;">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lt;생략&gt;</td> <td style="text-align: center;">&lt;생략&gt;</td> <td style="text-align: center;">&lt;생략&gt;</td> </tr> </tbody> </table>	구분	절차	주요내용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절차	주요내용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절차	주요내용												
<생략>	<생략>	<생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평가 결과 검토 (복지부 /협의 지원단)</td> <td style="width: 85%;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서 사후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성과지표 달성도</li> <li>- 평가 체계의 적절성 등</li> </ul> </li> <li>• ‘조건부’ 이행 여부 등 점검</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평가 결과 검토 (복지부 /협의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서 사후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성과지표 달성도</li> <li>- 평가 체계의 적절성 등</li> </ul> </li> <li>• ‘조건부’ 이행 여부 등 점검</li> </ul>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평가 결과 검토 (복지부 /협의 지원단)</td> <td style="width: 85%;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서 사후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성과지표 달성도</li> <li>- 평가 체계의 적절성 등</li> </ul> </li> <li>• ‘조건부’ 이행 여부 등 점검</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평가 결과 검토 (복지부 /협의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서 사후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성과지표 달성도</li> <li>- 평가 체계의 적절성 등</li> </ul> </li> <li>• ‘조건부’ 이행 여부 등 점검</li> </ul>	▼	▼					
평가 결과 검토 (복지부 /협의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서 사후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성과지표 달성도</li> <li>- 평가 체계의 적절성 등</li> </ul> </li> <li>• ‘조건부’ 이행 여부 등 점검</li> </ul>													
▼	▼													
평가 결과 검토 (복지부 /협의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서 사후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성과지표 달성도</li> <li>- 평가 체계의 적절성 등</li> </ul> </li> <li>• ‘조건부’ 이행 여부 등 점검</li> </ul>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후 검증 및 결과 통보 단계</td> <td style="width: 85%;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위원회 상정</li> <li>* 유사 협의사례가 있으나 단계적 확대 및 시범사업 우선 도입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하여 간소화 처리</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사후 검증 및 결과 통보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위원회 상정</li> <li>* 유사 협의사례가 있으나 단계적 확대 및 시범사업 우선 도입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하여 간소화 처리</li> </ul>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후 검증 및 결과 통보 단계</td> <td style="width: 85%;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평가전문위원회에서 검토 후 제도 조정전문위원회 상정</li> <li>* 유사 협의사례가 있으나 단계적 확대 및 시범사업 우선 도입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하여 간소화 처리</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사후 검증 및 결과 통보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평가전문위원회에서 검토 후 제도 조정전문위원회 상정</li> <li>* 유사 협의사례가 있으나 단계적 확대 및 시범사업 우선 도입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하여 간소화 처리</li> </ul>	▼	▼					
사후 검증 및 결과 통보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위원회 상정</li> <li>* 유사 협의사례가 있으나 단계적 확대 및 시범사업 우선 도입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하여 간소화 처리</li> </ul>													
▼	▼													
사후 검증 및 결과 통보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평가전문위원회에서 검토 후 제도 조정전문위원회 상정</li> <li>* 유사 협의사례가 있으나 단계적 확대 및 시범사업 우선 도입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하여 간소화 처리</li> </ul>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검토 결과 통보 (복지부 → 대상 기관)</td> <td style="width: 85%;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협의결과 통보(협의완료 또는 재협의)</li> </ul> </td> </tr> </tbody> </table>	검토 결과 통보 (복지부 →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협의결과 통보(협의완료 또는 재협의)</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검토 결과 통보 (복지부 → 대상 기관)</td> <td style="width: 85%;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협의결과 통보(협의완료 또는 재협의)</li> </ul> </td> </tr> </tbody> </table>	검토 결과 통보 (복지부 →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협의결과 통보(협의완료 또는 재협의)</li> </ul>									
검토 결과 통보 (복지부 →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협의결과 통보(협의완료 또는 재협의)</li> </ul>													
검토 결과 통보 (복지부 →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협의결과 통보(협의완료 또는 재협의)</li> </ul>													

구분	변경 전(2023년)	변경 후(2024년)
행정 사항	<p><b>VII. 행정 사항</b></p> <p>1. <u>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활용</u>                      &lt;생략&gt;</p>	<p><b>VII. 행정 사항</b></p> <p>1. <u>행복이음 사용 설명서(중앙부처 및 지자체)</u>                      &lt;생략&gt;</p>
	<p>2. <u>지자체 협조요청 사항</u></p> <p>● <u>광역-기초 지자체간 사전 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초 지자체에서는 협의요청서(서식 1,2) 제출시 보건복지부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u>에 동시 문서 시행(수신 지정 : 보건복지부 <u>사회보장조정과</u>, 관할 시도 협의 총괄부서)</p> <p>* [부록3] <u>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참조</u></p> <p>3. <u>2023년 방문교육 및 컨설팅 수요조사</u>                      &lt;생략&gt;</p>	<p>2. <u>지자체 협조요청 사항</u></p> <p>● &lt;삭제&gt;</p> <p>* &lt;삭제&gt;</p> <p>3. &lt;삭제&gt;</p>

---

#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I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 I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 1 제도의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4.7.>

## 2 제도의 목적

-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을 방지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등의 신설·확대 억제 등 국가와 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
-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가 제도의 내용과 제도 운영방안을 폭넓게 검토·분석하여 국가·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추구

### 3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013.1.27., 시행, 2012.1.26. 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

#### □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8215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19.1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4.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88호]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0.7.7.>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7.7.>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5.1., 2020.7.7.>

④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하게 해야 한다.<신설 2018.5.1., 2020.7.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9., 2017.7.26., 2018.5.1., 2020.7.7.>

# II

협의 대상





## II

## 협의 대상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 1 협의대상

- 협의 대상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동법 제3조제1호)’ 및 ‘**평생사회안전망**(동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사회서비스 범위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 지원 사업 포함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 2 신설·변경의 의미

- (신설)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기관에서 동일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에 해당
  -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기획 또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
- (변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부담 수준, 급여내용, 전달체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변경’ 예시

- 1)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
  - ① 대상자 **소득수준 변경** :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 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산정기준 변경**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금융재산
    - \* 단, 중앙정부 주도의 새로운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안 적용을 목적으로 조사방식 변경 및 이에 따른 불가피한 전달체계 변경(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소관, '22년 1월~)의 경우 변경 협의 제외
  - ③ **연령기준 변경** : 3세 미만 → 5세 미만, 60세 이상 → 65세 이상
  - ④ **가구특성 변경** : 청소년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구
- 2) **재정부담 수준 변경** : 자원조달방법 등의 자원 변경
  - ① 자원조달방법 변경 : 전액 정부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 3) **급여내용의 변경** : 급여·서비스 형태, 지원기간, 횟수의 확대·축소로 인한 급여내용 변경
  - ① 급여항목의 추가 또는 감소 : 교육비 → 교육비, 교통비, 식비
  - ② 급여 형태 변경 : 현금 → 바우처, 현금 → 비용면제 등
  - ③ 급여 지급기간·횟수 변경 : 1년 분기별 지급 → 5년 분할 지급
- 4) **전달체계 변경**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기관, 제공기관 등의 변경
  - ① 급여 신청기관 변경 : 특별행정기관 → 시군구, 공공기관 → 읍면동
  - ② 급여 제공기관 변경 : 읍면동 → 학교, 고용센터 → 읍면동

### 3 협의 제외 대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

사회보장기본법<sup>\*</sup>에 따라 국가 책임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연금, 건강보험 등)의 운영 및 재정 등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등은 아래 '협의 제외 대상'기준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임

\* 제25조(운영원칙),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예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등

- (협의제도 시행 이전 사업) 협의제도 시행(13.1.27)이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지속·유지되고 있는 사업
    - 제도 시행 이후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협의대상
  - (민간재원사업)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 기부금 지정 사업 등과 같이 지자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재원의 전부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으로 책정된 사업도 협의대상에서 제외
  - (법률/조례안)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률안 및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은 협의대상
  -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한 변동
    - 중앙정부 주도의 새로운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안 적용을 목적으로 조사방식 변경 및 이에 따른 불가피한 전달체계 변경(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소관, '22년1월~)의 경우 변경 협의 제외
- 단, 중앙정부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안 적용 목적 외 협의요청기관의 재량에 따른 소득기준 및 조사방식의 신설·변경 등은 협의대상에 해당
- (단순예산변동)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협의완료한 동일내용의 사업 중,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내용(지원항목·방식, 지원기간·횟수, 단가)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 등만 변동
    - 국회·의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액수'만 변경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협의 당시 연차별 계획에 단계별 대상확대/금액 인상 등이 확정된 경우

☞ 예 : '20년 만 30세 이상-만 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0만원(자부담 3만원) 행복바우처 지급 → '21년 만 30세 이상-만 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2만원(자부담 3.6만원) 행복바우처 지급(2만원 증액), 그 외 지원기간 등 사업내용 동일

단,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당시 지원수준의 적정성 및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되어, 사업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협의완료(조건부 포함)한 사업의 경우에는 급여액수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협의대상에 해당

●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업무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고유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위탁과 사업비 지원 협의대상임  
 ☞ 예 : 지자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협의대상이 아니나, 어린이집 이용료(본인부담금) 지원은 협의 대상

- 사회보장시설, 기관, 단체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사회보장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지칭함

☞ 예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

-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법령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과 조례 포함

\* 사회보장 관련법령 페이지 참조

- 고유사업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의 반복적·정기적 성격의 경상운영비 및 인건비(처우개선비 포함) 지원 등을 의미함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 업무 등 반려사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검진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교통수당 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경로당 방역소독 사업,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사업,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공공심야약국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

- 또한 관련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회보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공모 등 포함) 및 **보조 사업비** 지원, 관련 시설, 기관,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경비 및 인건비 지원** 등도 협의대상임

**고유업무 재정지원 여부에 따른 협의(제외)대상 예시**

- **(예시1) 임신부,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
  - (협의대상) 임신부,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에게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바우처 또는 이용료 지원 (보건소는 신청·접수 등 대상자 관리)
  - (협의제외대상) 보건소의 인력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관련법령\*에 규정된 보건소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 증액 (보건소 직접 사업 수행)
    - \*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 **(예시2) 학교밖청소년 대상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 (협의대상)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학교밖청소년 등을 위한 학습 및 체험활동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 및 강사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민간위탁(공모) 사업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은 사회보장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회보장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음)
  - (협의제외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22년1월 시행)」에 근거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대안교육기관(시도교육청 등록)의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
- **(예시3)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학비, 교육비 등) 지원 사업**
  - (협의대상) 특정 대상 및 용도를 지정해 장학재단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 (협의제외대상)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장학재단(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반복적·정기적 성격의 경상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장학재단 등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

- **(한시적 사업) 사업 시행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단년도(1년 이하) 사업 시행 후 종료되는 한시적·일회성 사업**
  -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여 단년도 내 일몰되는 사업
  - 일회성 성격의 주민(시민)참여예산 또는 공모사업 등

단,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정책실험) 사업**의 경우 협의대상

- **(재원분담비율 변경) 보건복지부장관과 기 협의완료한 사업 중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지원항목·방식, 지원기간·횟수 등) 등의 변경 없이 국고보조율 및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간 합의에 따른 재원분담비율의 변경**
  - 광역자치단체 사업 신설 당시 관내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협의완료 후, 향후 동일 사업내용으로 전체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추진 시 협의 제외
    - ☞ 예 : 국고보조율 50% → 국고보조율 60% / 도 60%, 시·군·구 40% → 도 70%, 시·군·구 30%
-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및 축소**
  - 일부항목 확대 포함 시, 협의 대상
- **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피해보상/구조지원사업 등
    - ☞ 예 : 시민안전보험 가입, 당해 예산 변경(예비비, 추경, 이·전용 등) 사업(차년도 사업은 협의 대상), 질병청 지정 국가 필수 예방접종, 법령 및 법원 판결 등에 의한 각종 피해보상 및 구조지원 사업, 범죄예방 및 치안대책, 성매매·성폭력 피해보상 지원
  - 고용 안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대상 경상운영비, 간접노무비(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등) 지원 등**
    - ☞ 예 : 직무교육 강사로 및 재료비 지원, 홍보·교육(간담회 등)지원, 관련 기관·위원회 운영경비, 회의비 등
 

단,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 근로자 인건비·수당 지원 등의 사업, 1인 소상공인 등 **간접노무비의 직접 수혜자가 사업주**가 되는 경우 등은 협의대상임

 ☞ 예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 불특정 다수 대상 정책 홍보·교육, 정보제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예, 리플렛 제작, 교육자료제공, 공유 포털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동물보호·복지 증진 목적 사업(예,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
  - 국방의무 이행자(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이발비 등 입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사업만 해당〉

-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예산편성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실제 수요 대비 매칭된 사업량(지원규모)가 부족하여 지자체가 동일한 사업내용(선정기준, 지원수준 등)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업

☞ 예 : 노인일자리(공익활동)에 대한 지자체 추가예산편성 등

☞ 예 : 기 협의완료한 광역-기초 지자체 매칭 사업 중 기초 지자체의 추가예산편성 등

- (중앙사업지침에 기속된 지자체 의무사업) 지자체 사업시행에 대한 주요내용(선정기준, 지원수준, 전달체계 등)이 중앙사업지침에 기속된 지자체 사업(예산만 집행)의 경우 '중앙부처'가 일괄 협의함으로써 협의대상에서 제외

☞ 예 :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만기퇴소아동 또는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단, 중앙사업지침 내용과 상이(변경, 확대 등)하거나 중앙사업지침이 있으나 포괄적 가이드라인의 수준으로, 주요내용(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수준, 전달체계 등)을 지자체가 정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대상임

☞ 예 : ①지침내용과 상이한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시 추가지원(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금 일부 추가 지원), ② 세부기준은 지자체가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지역 자율형 사회보장사업 참고)

-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지자체 사업 중 정부 사업 기준을 동일 적용하여 신설한 경우, 정부 사업 기준 변동(예, 부양의무제 폐지 등)으로 지자체 사업내용의 변경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 (단, 지자체 사업 지침 및 관련 조례에 해당 내용 명시)

☞ 예 : 00시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지침에 지급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을 준용함을 명시하고 있고, 정부 사업 변동(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00시의 동일 내용이 자동 변경되는 경우

- (보훈사업 및 피해보상 지원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대상에 대한 보상지원사업, 역사적 사건 등에 따른 피해 보상 지원 등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목적의 지자체 보훈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관련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 참고)

☞ 예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지원,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절위문금, 의사상자 지원 등

### 보훈사업 및 피해보상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과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 관련 사업 대상자 중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향후 신규 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지원금액의 반영여부는 중앙부처 담당 사업과 또는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확인 후 지급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업지침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등 참고)

- (거주요건 변경) 보건복지부장관과 기 협의완료한 동일내용의 사업 중 지원내용(지원 항목·방식, 지원기간·횟수 등), 전달체계 등의 변경 없이 거주요건만 변경
- 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기타 반례 사례

- 법률(조례 위임 등)에 근거한 지역별 교통 관련 수단·시설·인력 지원 정책  
☞ 예 : 100원 버스 사업, 택시기사 처우개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등 (단, 주민 대상 교통비 지원(요금감면 등) 사업은 협의대상임)



### 〈지역 자율형 사회보장사업〉

- 중앙사업지침이 있으나 포괄적 가이드라인의 수준으로, 주요내용(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수준, 전달체계 등)을 지자체가 정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협의대상

#### 〈 지역 자율형 사업개요 〉

- (정의) 중앙정부 포괄 지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지자체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계획·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
- (특징) 중앙사업지침에 기속되어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예산만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적 형태와 달리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주체는 지자체
  - \* 다수는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비 100%로 시행되는 사업 또한 일부 포함(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중 '자율지원유형' 등)
- (중앙부처) 기획 또는 예산편성을 담당하며,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만 지침 등을 통해 규정
- (지자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 대상자선정기준, 급여내용·수준, 전달체계 수립 등

- (중앙부처) 중앙사업계획 및 지침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소관 중앙부처는 지자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른 기준 준수를 안내하고, 지자체 개별사업 승인 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사업개요(체크리스트 등 간소화 양식 활용)를 일괄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 (광역자치단체) 광역사업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기초자치단체) 한시적 협의 제외(~'24년)
  - 단, 사업기획 시 소관 중앙부처의 사업지침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 소관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사업승인 시 사업개요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부처에 제출

## 4 신속 협의

-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세종특별자치시
- 요건: 예산액 年 2억원 이하 사회서비스
  -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아닌 것
    - \*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업 집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업.  
ex) 외래본인부담 전액 지원하는 사업 등
  - 사업 내용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구조를 반드시 갖출 것
  - 1인당 수혜액 月 10만원(年 120만원) 이하
- 방식: 복지부로 관련 내용 제출 시, 협의 절차 신속 이행(단, 요건 충족 시)

☛ 참고 | 사회보장 관련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한센인피해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등
-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구강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약사법 등
-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III

협의 절차



# Ⅲ 협의 절차

##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절 차	주요 내용
사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협의지원단 공동으로 <b>광역권역별 컨설팅</b> 지원</li> </ul>
<b>협의요청</b> (요청기관 →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협의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접수 및 절차 진행</li> </ul>
<b>자료보완</b> (복지부/협의지원단 → 요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에 필요한 자료의 누락, 보완 필요 시 수정·보완 (보완자료 기간은 협의기간에 미산입)</li> <li>* 보건복지부 또는 협의지원단 담당자가 행복이음 또는 유선 등으로 요청</li> </ul>
<b>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b> (복지부 → 관계부처 및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요청사업 중 쟁점이 있는 경우 소관 부처 및 광역 지자체에 의견 조회, 필요시 인접 기초 지자체에 의견조회</li> </ul>
<b>전문가 의견수렴</b> (복지부/협의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그룹(협의지원단) 자문 등 의견수렴</li> </ul>
<b>제도조정전문위원회 검토·협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 쟁점,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종합적 검토</li> <li>· 필요시 협의요청기관 사업 담당자 참여 및 의견 개선 가능</li> </ul>
<b>결과 통보</b> (복지부 → 요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안건 : 60일 이내 처리</li> <li>· 쟁점안건 : 최대 6개월 이내 처리</li> <li>* 협의요청기관의 자료보완기간 등은 협의기간에 미산입</li> <li>· 협의요청기관, 협의총괄부서(중앙부처-기재부, 각 부처 재정부서, 지자체-관할 시·도), 지방의회 사무처(지자체 사업에 해당)에 <b>동시 통보</b></li> </ul>

## 1 권역별 컨설팅 지원

- **(목적)** 사회보장사업 설계를 정교화하고 담당 실무자의 기획력 등을 강화하는 등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컨설팅 지원
  - 한정된 행정인력과 제약된 일정 등을 고려, 개별 지자체 방문 보다는 권역별 컨설팅 방식으로 개편
  - 권역 내, 또는 인근 지자체 참석이 가능하여 보다 많은 지자체 인력 참여 및 논의 가능
  - 복지부·협의지원단·지자체 간 유사 사업 등에 대한 토론과 논의 기회 제공
- **(방법)** 광역단위의 권역별 합동 워크숍 형태로 정책 컨설팅 지원
  - 광역단위 권역별 컨설팅 별도 일정 수립 및 공지

## 2 신설·변경 협의요청

- **(협의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불임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②항)
  - 협의요청기관은 (서식 1,2)의 양식에 따라 행복이음을 통해 접수 및 절차 진행

다만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협의요청서 서식에 맞지 않을 경우 접수 단계에서 '반송' 처리되며, 이 경우 보완 후 재접수하여야 함

- **(협의요청기한)**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법정기한 내(중앙행정기관의 장은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①항)
    -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4.30)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안 제출시기, 협의처리기한 등을 고려하여 5월말까지 제출
- ※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p.98) 「(9)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참고



- 요청기한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협의요청서 제출(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④항)
  - \* 긴급사유 소명서(서식 7) 첨부 제출
- 단, 법정기한 이후에 접수된 협의요청 사업은 본 지침의 협의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p.102)

(9)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V) 표기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 협의대상 포함여부, 협의기준 및 협의요청서 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참조			
※ 협의요청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복지부 제출이 원칙(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이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 이후 제출하는 경우(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도 <b>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시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30일 전까지는 복지부와 협의완료 必</b>				

### 3 협의의 진행

- **(협의기간)** 일반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법적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전문적 검토 및 관련부처(서)의 의견수렴과 협의요청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에는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 신청된 안건은 협의요청 접수 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법정기한 내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결과 또는 쟁점 안건 여부를 안내

- **(자료보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협의요청기관에 자료 제출 및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⑤항)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 누락 등에 따른 **자료보완 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협의절차)**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쟁점안건에 대하여 소관 기관(부처 및 부서), 관련 지자체(기초지자체 사업의 경우 소관 광역지자체 및 필요시 인근 지자체), 협의지원단을 통해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제도조정 전문위원회를 통해 협의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최종 협의결과 도출
  - 필요한 경우 요청기관의 사업담당자가 협의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자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신설변경 협의지원 업무 위탁기관(협의지원단)〉**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8항
-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현수 연구위원)
- **(기간)** 2022~2024 (3년)
- **(업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제도 운영지원 및 제도 개선 등
  - 원활한 협의 지원을 위해 협의지원단 안건 담당자는 협의요청기관 담당자에게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 확인 및 자료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 협의지원단 연락처 및 이메일 : 044-287-8100 / center380@kihasa.re.kr

- **(협의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결과 통보(서식3)
  - **지자체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 협의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 부서**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협의 총괄부서(기획재정부 예산실) 및 각 부처 재정부서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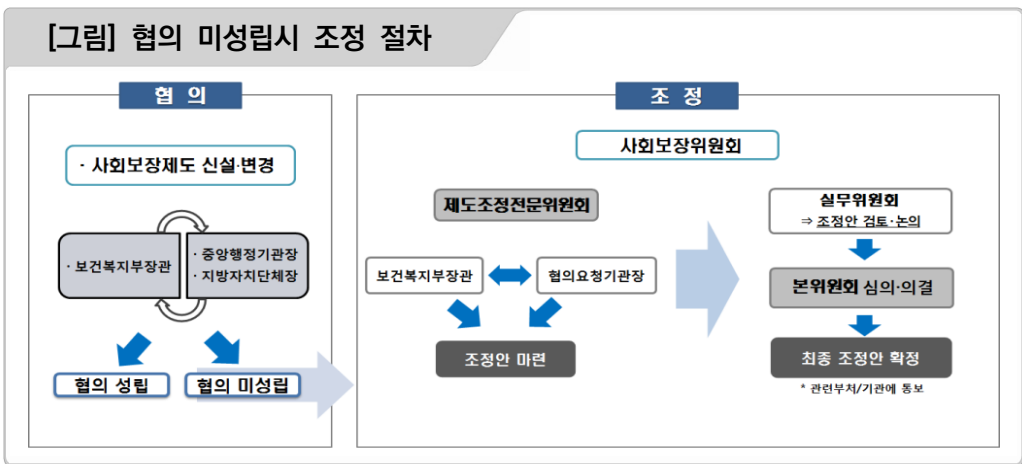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 **협의대상 아님** :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요청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이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조건부 협의완료** : 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 추진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한시적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완료, 일정기한 내 사업 종료 또는 관련 협의 장점 수정보완 등의 이행 조건 사업
    - \* 사업시행 이후 협의요청기관의 자체 성과평가 등을 기반으로 최종 '협의완료'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요청기관과의 추가 협의 필요
  - **재협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기준에 따른 사업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추가 협의 진행**(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 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요청)
    - 재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이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재협의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 
- **(협의 종료)**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사업에 대한 '자료보완' 요청 및 '재협의' 통보 후, 협의요청기관이 **장기간(2개월 이상)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등 더 이상 협의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하여 **협의절차 종료**
    - 협의절차 종료 이후 구체적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규로 협의요청** 하여야 함

## 4 조정의 진행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이루이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요청 기관장 간 이견이 있어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에 조정을 해야 함**(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사회보장위원회는 조정 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의견진술 또는 제출 기회 부여**(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되고, 해당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함(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 IV

## 협의 기준



# IV 협의 기준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변경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지역복지 활성화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진행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목적)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b>유사급여·서비스 여부</b> ⑦ 사업시행에 따른 <b>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b>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⑪ 재원규모 및 조달 계획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⑫ 재정집행의 효율성
5.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⑬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⑭ 지역 주민참여 및 복지수요 반영 ⑮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6. 기타	⑯ 성과지표 활용 등 성과관리 계획 수립 ⑰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사회보장제도 협의 기본방향**
  - ◇ **(국가-지자체간 사회보장협력체계 강화)** 제한된 공적 재원이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다자녀, 한부모, 청소년부모 등 사업별로 다양)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 국가-광역-기초 지자체간 **효율적 역할 분담방안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제도 운용 내실화
  - ◇ **(지역간 복지격차 최소화)** 지원규모 및 지원 수준은 기존 유사 사업 有無 및 해당 사업의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하되 지역간 복지 격차가 최소화되도록 상호 협의
    - 지자체간 **과도한 복지사업 경쟁을** 지양하고 **재정력차에** 따른 복지 급여 수준의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 1 사업의 타당성

###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 사업기획 및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 규정이 있는지 여부
  -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행하도록 규정 또는 조례로 위임이 되어있는 경우 근거조항 명시

###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등 지역특수성

-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수요파악 자료 등 지역에서 문제가 대두되게 된 배경이나 경위
  - \* 국가 또는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쟁점 여부,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범위와 규모 등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지역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사유 등 기존제도의 한계에 대한 평가 내용

### ③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

-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및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등 제도(사업) 도입 취지와 사업 내용 간 연계성 확보 여부
- 특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내용의 적정성 여부

###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 특히,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제도인 경우 공공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타당성, 기대효과, 사업설계 분석 등에 대한 협의기관의 분석결과 연구용역 결과 등 제출



## 2 기존제도와의 관계

### ① 사회보장제도 증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
-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증장기적 목표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추진 여부

###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 급여·서비스 제공 여부

- 동일 목적,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앙부처 사업 간, 광역-기초 지자체 간 급여의 중복, 편중 여부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중앙부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중복, 편중 여부

### ③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절성, 구체성, 선정기준 적용의 배타성 확보 등)
- 필요한 급여내용(지원수준, 지원방법·수단 등)의 누락·편중 여부

### ④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성을 통한 보충성 확보

- 기존 사회보장제도(국가 또는 광역 지자체 사업 등)에 대한 보충적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회보험은 국가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 지원

## 3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급여의 통합제공과 제도 간 연계를 위해 새로운 전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되 수급대상자·예산규모·사업량에 비례해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 기존 전달체계의 과부하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부처(서)와 인력 총원 방안 사전 협의 여부, 임시 인력 활용 계획 검토 여부 등

② 수혜자 접근성(편의), 급여제공의 적시성

- 신청기관의 지역적 분포 검토, 급여·서비스의 제공 기관이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수급대상자에 대한 필요정보(소득, 재산, 자격, 수혜급여 이력 등) 파악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재원 규모 및 조달 계획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사업 비중, 자체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체예산 중 신설·변경 사업예산 비율 등 검토
-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재정운용계획서(서식7)** 첨부 제출
  - \*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통해 같음

###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 대상

- 단년도 소요예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 광역 지자체 연 500억, 기초 지자체 연 50억 이상
  - \* (규모설정 기준) 최근 3년 협의요청한 지자체 사업 중 단년도 예산규모가 상위 3% 이내 수준

- 신설 사업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분담 합의여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협약서, 공문 등)** 첨부
- 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 및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여부
- 신설변경 사업의 재원 확보로 인한 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② 재정집행의 효율성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인한 중앙-지방,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원 분담에 미치는 영향

## 5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 계획 반영 여부
- ② **지역 주민참여 및 복지수요 반영**
  - 사업 설계 단계에서 복지욕구조사 등 주민 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 주민 공청회, 간담회 등 지역 주민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 ③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을 위한 노력

## 6 기타

- ① **사업 목표 달성 여부 등 사후 성과관리 계획 수립**
  - 사업 목표 달성도 관리 및 성과지표 활용 등 사후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여부
- ② **제도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협의 후 사업 시행까지 전달체계 구축, 인력·재원 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

#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V

이행 점검 및 후속 조치



# V 이행 점검 및 후속 조치

## 1 이행 점검

- **(중앙부처사업 협의이행 확인)**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예산편성 후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시 사전 협의 결과 확인 의무화
  -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개정('16년~)
  - \*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목록 참조
- 「'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9)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확인 의무화
- 각 부처는 사회보장제도(사업)에 대해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재정 당국에 예산요구
- ① (사업부서) 협의여부·협의결과를 첨부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② (예산부서) 기획재정부 제출 전, 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9)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V) 표기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 )	협의 완료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 협의대상 포함여부, 협의기준 및 협의요청서 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참조			

※ 협의요청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복지부 제출이 원칙(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이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 이후 제출하는 경우(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시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30일 전까지는 복지부와 협의완료 必**

-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과 관련한 **법률안의 제·개정 시**, 사업대상, 선정기준,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

\* 법제처 **법제업무편람 개정**(’20년~)

\* **법제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공문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지자체사업 협의이행 확인)** 지자체 예산편성 또는 조례제정 단계에서 협의·조정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시행 전 원활한 협의 절차 이행

- 협의대상 사업의 경우 조례안·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사업담당 부서 및 예산·법무 부서간 협의이행 여부 확인

① **(사업부서) 협의여부·협의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② **(예산·법무부서) 지방의회 제출 전, 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 지침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이행 안내 (’19년~)

①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V. 예산편성 참고자료 「예산의 편성절차」 다. 예산의 조정 (p.378)

② 2022년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 「제2장 조례의 입법 절차」 3. 관계기관 협의

- **(자료요구 및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 대상 확인, 협의가 완료된 사항 및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집행 현황 등 관련자료를 협의요청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예) 당해연도 협의요청 한 사업의 예산안 의결 현황 등 제출(관련서식 추후 배포)



## 2 협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

-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16.1.1 시행)에 따라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의 적용사례 및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를 나열(해당내용은 9호)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중앙부처 공모사업 배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개정( '16년~)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협의 의무 위반 지자체에 대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배제 가능( '16년~)

\* ('23년 예산집행지침) 보조금 교부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준수·정책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 중앙부처 재량지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공모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중앙부처 공모사업 협의제도 이행여부 확인절차〉

- (추진배경) '20.1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모사업 대상 선정시 협의 의무 위반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 조치 필요
- (지자체 협의이행 여부 확인 절차)
  - ① 사전협의(중앙부처→복지부) : 중앙부처는 공모사업 내용 및 참여 지자체 현황 등의 확인을 사전에 복지부와 사전 협의
  - ② 협의제도 이행여부 확인 요청(중앙부처→복지부) : 공문 시행, ①에 따른 양식 준수
  - ③ 협의제도 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통보(복지부→중앙부처) : 공문 시행
  - ④ 협의이행 여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모사업 대상기관 선정(중앙부처) : 반영여부 및 수준 등은 중앙부처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연계) 지자체 단발성·즉흥적 사업 추진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협의 이행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절차 준수」 반영\*('20년~)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 개정('19년~)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자료를 토대로 사업단위별 협의이행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지역복지과)

**〈지역사회보장계획〉**

- **(개념)**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격차 완화 및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장기계획(4년 단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 **(수립절차)**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 후 의회 보고 → 복지부 제출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 **(시행결과 평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후 우수 지자체 포상

- **(협의 우수사례 발굴)** 성실 협의이행과 협의 기준에 따른 체계적 사업 기획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협의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지원

참고 | 지자체 사전협의 우수사례 참고 기준

'24년부터 사전협의 우수 사례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해당 사전협의 지자체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관표창외 포상금 지급

구분	우수 협의사례 참고 기준	충족 여부	사례 또는 예시
1. (지원대상)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 대상 설정 여부	사회적 약자, 거동불편자 등 사업목적에 맞는 구체적 지원대상 설정	<input type="checkbox"/>	학생 전체 → <u>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에 지원 특화</u> 65세 이상 노인 병행동행 서비스 → <u>70세 이상 1인 독거노인 또는 보행장애 노인</u>
2. (지원대상 수준) 본인 부담금 설정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차등 설정(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포함)하여 지원하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u>본인부담금 10% 부과 후 지원</u> , 중위소득 <u>50초과 120% 이하 본인부담금 30% 부과 후 지원 등</u>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서도 <u>최소 본인부담금 설정</u>
3. (지급형태) 사회서비스 제공 형태의 사업 신설·변경 여부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신설 또는 변경한 사업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비 100만원 현금 지원 → 관내 산부인과를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해 <u>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서비스 지원</u>
	현금급여 사업을 현물, 바우처 등으로 신설 또는 변경한 사업	<input type="checkbox"/>	부모 계좌에 현금 계좌 이체 → <u>교육 바우처로 학교내 필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후정산 방식 사업 신설</u>
4. (지원수준) 지역 간 복지급여 격차 최소화 노력 여부	(광역) 기초 지자체별 분산 되어 있는 유사 사업군을 광역 사업으로 신설 또는 변경 (기초와 재정분담 협의의 必 등)한 사업	<input type="checkbox"/>	(광역)기초 지자체별 교육 지원(지원수준 상이) → <u>도교육청으로 일원화(시군과 재정 분담)</u>
	(기초) 해당 광역 내 또는 인접 생활권역 내 기초 지자체의 유사 사업의 지원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 지원수준(평균값 또는 중위값)으로 복지 급여 조정	<input type="checkbox"/>	(기초) 다자녀 양육수당 월 50만원 지원 → 인근 지자체 지원수준을 고려,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되 양육바우처 <u>월 10만원으로 조정</u>

구분	우수 협의사례 참고 기준	충족 여부	사례 또는 예시
5. 차별성있는 사업 신설 또는 다수 유사사업들을 통합해 단일 사업으로 신설	기 시행 중인 타 지자체와 비교 시 차별성 있거나 기존에 국내에 시행한 적이 없는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변경한 사업	□	인근 지자체 유사 양육바우처 지원(금액만 상이) → <b>타 지자체에서 시행된 적 없는 차별성있는 신규 육아 돌봄 서비스 신설</b>
	단일 지자체내 또는 지자체-교육청간 유사 사업들을 중복지출을 최소화한 단일 형태의 사업으로 통합	□	교재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아침조식 지원,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청 및 지자체 개별 사업 각기 추진 → <b>개별 현금급여, 바우처 사업 등을 단일의 '교육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해 중복지출 최소화</b>
6. (전달체계) 제공기관 등 인프라 확보 여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인력)을 확보하거나, 또는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인근 지자체 서비스제공 기관과 협약 등)한 사업	□	관내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정을 통해 관내 산후조리 수요 흡수  관외 확장장려금 현금 지원 → <b>인근 지자체와 지역 확장시설 이용 협약 지원</b>
7. (사후관리) 사업성과 관리 체계 설정 여부	사업 시행 이후 사업성과 관리가 정기적으로 가능하도록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한 사업 (사업평가 체계 포함)	□	일회성 자체 점검 → <b>서비스(바우처) 관리 기관과 분기별 용처 관리 점검 및 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b>
8. (협의기한준수) 법정 협의기한 준수 여부	중앙은 전년도 4월30일, 지자체는 전년도 6월30일까지 협의요청한 사업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9. (추진근거 등) 사업 추진의 근거 확보 여부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 계획 등 기존 국가 또는 지자체 계획에 사전에 포함된 과제나 사업인 경우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에 <b>기 반영된 과제를 신설 또는 변경</b> 과제로 사전 협의
10. (협의이행) 사전 협의 이행 수준	재협의/조건부 협의완료 등 협의사례를 제외한 '협의완료' 사업	□	



# VI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 VI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 1 성과지표 활용

- **(목적)** 협의완료 이후에도 협의요청기관이 사업 목적·목표 달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정 성과지표 선정 및 활용을 위한 지침 제공

- 특히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성과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목적임

\* 2019년부터 신설변경 협의 요청 시 **협의요청서에 성과지표를 기재**하도록 지침에 명시

### 〈협의요청서 양식〉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 협의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성과지표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table border="1"> <tr> <td>2024</td> <td>2025</td> <td>2026</td> <td>2027</td> <td>2028</td> </tr> <tr>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r> </table>	2024	2025	2026	2027	2028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2024	2025	2026	2027	2028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 2021년 지침 개정 시부터 반영											

- **(그간 성과지표 활용의 한계)** 사업 설계 시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지표를 채택하는 사례 다수 (예, 참여율, 집행률, 만족도 등)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지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지표, 통계청 지역통계 등 활용 가능한 지표에 대한 사전 정보 안내 및 활용 미흡
- **(성과지표 개발 및 절차)** 협의요청기관이 협의요청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점검하여 적정 성과지표 개발 도모

- (1단계) 사업목적 및 상위목표 확인 → (2단계) 사업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 (3단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점검 → (4단계) 목표치의 적정성 점검 → (5단계) 최종 성과지표 설정
- ※ (부록6) 정책 영역별 대표성과지표 및 사업내용별 세부지표 예시 목록

〈 표1. 지역사회보장사업 성과지표 개발절차 〉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점검사항	
1단계	목적/ 상위목표 확인	사업목적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가?	<input type="checkbox"/>
		상위목표	사업이 상위 정책영역(대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가?	<input type="checkbox"/>
2단계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투입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포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과정	사업과정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산출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성과물을 포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결과	사업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수반되는가?	<input type="checkbox"/>
3단계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	연계성	성과지표는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대표성	성과지표는 전체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결과성	성과지표는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인 결과지표로 선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정량성	성과지표는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정량지표로 선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명확성	성과지표명과 측정산식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input type="checkbox"/>
		측정가능성	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며 사용상의 제약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인과성	성과를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신뢰성	성과지표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적시성	성과분석 및 평가 전에 성과측정이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왜곡성	성과목표치의 달성이 의도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4단계	목표치 적절성	과거추세치, 추진계획, 유사사업, 국제수준과의 비교 및 부처의 개선노력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5단계	최종성과지표 설정			



〈 표2. 성과지표 정의 및 세부 점검기준 〉

단계	구분		정의		
1단계	사업목적/ 상위목표 확인	사업목적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상위목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상위 정책 목표		
2단계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지 표 유 형	투입	예산과 인력 등 자원 투입량을 나타내는 지표	
			과정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량을 보여주는 지표	
			산출	사업 완료 이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보여주는 지표	
			결과	1차적으로 나타난 산출물 양을 통해 추후 궁극적으로 사업의 효과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단계	구분		점검기준		
3단계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기준	연계성	연계성	도출된 결과지표는 정책영역별 대표지표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가?	
			대표성	도출된 결과지표는 프로그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결과성	성과지표는 궁극적 프로그램 목적을 반영하는 결과지표로 선정되었는가?	
			정량성	성과지표는 정량지표로 선정되었는가? * 정량지표 :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한 지표	
		명확성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은 명확한가?	명확성	성과지표명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가? 측정 산식, 측정 대상 기간,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제3자가 파악하기 용이(목표 대비 실적 형태 및 자의적 지수화 지양)한가?
				측정 가능성	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성과측정 데이터 존재 시 사용에 제약이 없는가? 현재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시 수집·생산이 가능한가? 데이터의 수집·생산에 드는 시간·비용은 적절한 수준인가?
		인과성		인과성	프로그램범위(대상, 예산 등)를 넘어서지 않는가? 도출된 결과지표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외부요인 등에 따라 목표수준 달성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결과 자체는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성과인지 확인)
				신뢰성	제3자가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정성지표의 경우, 사전에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는가? * 정성지표 :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한 지표
		적시성		적시성	평가 전에 성과측정이 가능한가? 측정대상기간과 평가대상기간은 일치하는가?
				왜곡성	목표치 달성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가?
		4단계	목표치 적절성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 수준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는가?

〈 예시 1. 지자체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점검내용										
1단계	목적/ 상위목표 확인	사업목적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전세대출금의 2% 이내 이자 지원	<input type="checkbox"/>									
		상위목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input type="checkbox"/>									
2단계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투입	5년 간 총 수혜인원 500명, 총 투입 예산 10억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대상자 선정, 수혜 여부 및 효과성 조사	<input type="checkbox"/>									
		산출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수의 확대	<input type="checkbox"/>									
		결과	주거환경 개선 여부	<input type="checkbox"/>									
3단계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	연계성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월세 및 대출이자지원으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이므로 해당 지표의 연계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대표성	1인당 주거면적을 파악하여 사업 전체를 평가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결과성	1인당 주거면적의 경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결과 지표임	<input type="checkbox"/>									
		정량성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정량지표임	<input type="checkbox"/>									
		명확성	1인당 주거면적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표임	<input type="checkbox"/>									
		측정가능성	사업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인과성	1인당 주거면적을 통해 사업효과성 분석이 가능해짐	<input type="checkbox"/>									
		신뢰성	제3자에 의해 측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적시성	사업 주기별로 매년 측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왜곡성	지표달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부작용 없음	<input type="checkbox"/>											
4단계	목표치 적절성	2021년 기준 중산층 1인당 주거면적이 22m <sup>2</sup> 이므로 고소득층 기준인 26.7m <sup>2</sup> 에 근접하도록 목표치를 설정함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h>2024</th> <th>2025</th> </tr> </thead> <tbody> <tr> <td>1인당 주거면적</td> <td>22m<sup>2</sup></td> <td>23m<sup>2</sup></td> <td>24m<sup>2</sup></td> <td>25m<sup>2</sup></td> <td>26m<sup>2</sup></td> </tr> </tbody> </table>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1인당 주거면적	22m <sup>2</sup>	23m <sup>2</sup>	24m <sup>2</sup>	25m <sup>2</sup>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1인당 주거면적	22m <sup>2</sup>	23m <sup>2</sup>	24m <sup>2</sup>	25m <sup>2</sup>	26m <sup>2</sup>								
5단계	최종 성과지표	신혼부부 1인당 주거면적 / 주거면적 증가율											

〈 예시 2. 지자체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 사업〉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점검내용											
1단계	목적/상위 목표확인	사업목적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시 기업 및 청년에게 보조금 지원	<input type="checkbox"/>										
		상위목표	현업에서 일할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에게 고용과 현업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고용의 부담을 덜어 궁극적으로 취업률·실업률 제고 가능	<input type="checkbox"/>										
2단계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투입	지원대상 65명 / 지원 예산 5억 700만원 투입(기업지원금 월 100만원 6개월, 청년지원금 월 30만원 6개월치 지급)	<input type="checkbox"/>										
		과정	대상자 선정, 취업 여부 및 효과성 조사	<input type="checkbox"/>										
		산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수혜자 수의 확대	<input type="checkbox"/>										
		결과	사업 종료 후 6개월 뒤 구직자들의 취업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3단계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	연계성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실업률 완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지표	<input type="checkbox"/>										
		대표성	사업수혜율 및 취업률이 사업 전체를 평가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결과성	취업률의 경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결과지표임	<input type="checkbox"/>										
		정량성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정량지표임	<input type="checkbox"/>										
		명확성	사업수혜율과 취업률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표임	<input type="checkbox"/>										
		측정가능성	사업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인과성	구직 경험을 제공하여 업무교육이 가능하고 이러한 역량이 취업으로 이어짐	<input type="checkbox"/>										
		신뢰성	제3자에 의해 측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적시성	사업 주기별로 매년 측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왜곡성	지표달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부작용 없음	<input type="checkbox"/>										
4단계	목표치 적절성	사업에 대한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목표치 상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연도</td> <td>2022</td> <td>2023</td> <td>2024</td> <td>2025</td> </tr> <tr> <td>취업률</td> <td>60%</td> <td>62%</td> <td>65%</td> <td>68%</td> </tr> </table>		연도	2022	2023	2024	2025	취업률	60%	62%	65%	68%	<input type="checkbox"/>
연도	2022	2023	2024	2025										
취업률	60%	62%	65%	68%										
5단계	최종 성과지표	(사업 종료 6개월 후) 인턴 수료자 취업률												

〈 예시 3. 지자체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점검내용				
1단계	목적/ 상위목표 확인	사업목적	학업중단학생의 학업복귀 등을 위한 학습 활동 참여 지원 목적의 교육참여수당 지급	<input type="checkbox"/>			
		상위목표	학업중단률 제고를 통해 교육기본권 확보	<input type="checkbox"/>			
2단계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투입	1년간 약 500명의 학생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총 6억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대상자 선정, 수혜 여부 및 효과성 조사	<input type="checkbox"/>			
		산출	지원 사업 수혜자 수의 확대	<input type="checkbox"/>			
		결과	학업중단률 개선	<input type="checkbox"/>			
3단계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	연계성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 참여이므로 해당 지표의 연계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대표성	학업중단률을 파악하여 사업 전체를 평가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결과성	학업중단률의 경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결과지표임	<input type="checkbox"/>			
		정량성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정량지표임	<input type="checkbox"/>			
		명확성	학업중단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표임	<input type="checkbox"/>			
		측정가능성	사업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인과성	학업중단률을 통해 사업효과성 분석이 가능해짐	<input type="checkbox"/>			
		신뢰성	제3자에 의해 측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적시성	사업 주기별로 매년 측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왜곡성	지표달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부작용 없음	<input type="checkbox"/>			
4단계	목표치 적절성	전년 대비 개선률 평가 (학업중단률이 낮아지면 사업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연도</td> <td>2025</td> </tr> <tr> <td>학업 중단률</td> <td>전년 대비 학업중단률 개선</td> </tr> </table>	연도	2025	학업 중단률	전년 대비 학업중단률 개선	<input type="checkbox"/>
연도	2025						
학업 중단률	전년 대비 학업중단률 개선						
5단계	최종 성과지표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 학생 감소율					

### 3 사업 영향평가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 **(목적)**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협의요청기관의 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 추진
  - \* 협의사례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세부 평가대상·시기·방법 등은 변동 가능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기관에 ‘조건부 협의완료’ 등을 통보한 사업
  - \* ‘조건부 협의완료’ 결과 통보 시 일정기한 내 평가계획서(서식8)를 제출하도록 안내
- **(시기)**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개시 시점부터 2년 내** 평가 실시
  - 다만, 사업 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시점 변동 가능
- **(방법)** 협의요청기관의 자체 평가 실시 후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복지부) 추진
  - **(협의요청기관)** 자체 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역연구원, 대학산학협력단, 국책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평가 수행
  - **(보건복지부)** 협의요청기관이 객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고, 협의요청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메타평가 등) 시행

####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영향평가 사후관리 절차〉

구분	절차	주요내용
<b>계획 단계</b>	대상 선정 및 평가 안내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른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li> <li>• 시범사업 시행기간이 2년차로 도래되는 사업(사전현황조사 실시)</li> <li>• 평가 시행을 위한 사전 일정 및 평가 일정 안내</li> </ul>
	사업 평가계획 수립 (평가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집행 기간 동안의 사업 영향 평가 계획서 작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및 평가지표</li> <li>- 평가방법 및 수행기관</li> <li>- 평가 결과 활용 계획</li> </ul> </li> <li>* 평가계획서 (서식8 참조)</li> </ul>

구분	절차	주요내용
	▼ 평가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 지원 (협의지원단)	▼ • 성과지표 등 평가 계획서의 적절성 검토 * 필요시 적정 성과지표 및 평가 방식 설정 등 정책 컨설팅 지원
실시 단계	▼ 사업 집행 (평가 대상 기관)	▼ • 사업집행 (2년차)
	▼ 자체 평가 결과 작성 및 제출 (평가 대상 기관 → 복지부)	▼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작성 • 제출서류 : 기관 자체 평가 결과서, 참고자료 등
사후 검증 및 결과 통보 단계	▼ 평가 결과 검토 (복지부/협의지원단)	▼ •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서 사후 검증 - 목표 / 성과지표 달성도 - 평가 체계의 적절성 등 • '조건부' 이행 여부 등 점검
	▼ 사후검증 결과 검토 (평가전문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 •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평가전문위원회에서 검토 후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상정 * 유사 협의사례가 있으나 단계적 확대 및 시범사업 우선 도입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 토록 하여 간소화 처리
	▼ 검토 결과 통보 (복지부→대상 기관)	▼ • 최종 협의결과 통보 (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 VII

행정 사항





# VII 행정 사항

## 1 행복이음 사용 설명서(중앙부처 및 지자체)

### 1 신설·변경 협의 요청 방법

신설·변경 협의 요청 목록 (총 20건)

번호	기관구분	협의요청기관	협의사항	제도시스템명	협의 요청일	검토결과 통보일	진행상태	검토결과	결과보기	이력보기	변경협의요청
1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협의요청	상학교육	상계	요청
2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3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4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5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6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7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8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9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10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11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12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13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14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15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16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17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18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19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20	부처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신설]경기도.선릉초교의.지원.사업_신설.신설	2002-09-20	2002-09-20	완료	상학교육	상계	요청

신설협의요청

- 1) 신설요청의 경우 우측하단 '신설협의요청' 버튼 클릭
- 2) 변경요청일 경우 변경 대상 협의의 가장 우측에 있는 '요청' 버튼 클릭

변경 협의 요청 세부 등록(신설요청)

최초협의요청일: 2023-11-15 | 협의요청일: 2023-11-15 | 제도시스템의 도입(예정) 일자: 2024-01-01

협의요청기관: 경기도 | 업무종류: 신규사업

담당자명: 김성준 | 담당자 휴대전화: 010-2696-6793

담당자 이메일: ksj@krc.or.kr

사업명: 순천군 순천초교가용용량 증대사업

사업구분:  신설  변경

목적별(변경):  추가  삭제  용허리  신축/건실  증축

목적별(변경):  용허리 및 추가  증축 및 용허리보장  용허리 증축  신축/건실  보충 및 교육  증축

사업유형:  신축/보수/기타  신축/보수/기타  신축/보수/기타  신축/보수/기타  신축/보수/기타

- 1) 최초 협의요청일
- 2) 협의요청일
- 3) 협의요청기관
- 4) 담당자 전화번호
- 5) 사업유형 등 작성

성격지표 (수혜자 수)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수혜자 수	4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선정기준 (수혜대상)

4차년도 기준, 당시 적용 중인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인정액 140% 이하인 만 18세 이상 65세 근로장애인 한정

대상

구분	개년	2024	2025	2026	2027	2028
개인	100 (명)	100	0	0	0	0
가구수	0	0	0	0	0	0
계소	0	0	0	0	0	0
계	0	0	0	0	0	0
2024	0	0	0	0	0	0

6) 성과지표(수혜자 수)

7) 선정기준

지원내용 (현금인지 비현금인지)

지원유형(현금)  현금기금  현금(가족용)  현금기금  현물대여  공판

지원유형(비현금)  전직(부유직(비유직))  생활비유치  프로그램(서비스(비서비스))  자원봉사  시설입소

지원유형(현금)  현금기금  현금(가족용)  현금기금  현물대여  공판

지원유형(비현금)  전직(부유직(비유직))  생활비유치  프로그램(서비스(비서비스))  자원봉사  시설입소

지원유형(비현금)  자격요건  기타

지원유형(비현금)  지원유형(비현금)  지원유형(비현금)  지원유형(비현금)  지원유형(비현금)

지원유형(비현금)  지원유형(비현금)  지원유형(비현금)  지원유형(비현금)  지원유형(비현금)

신청(현금)  신청(비현금)

신청(비현금)  신청(현금)

8) 지원내용(현금인지 비현금인지)

소요자원(시비, 도비 등)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총규모(백만원)	2,880	1,440	1,440	1,440	1,440
국비(0.00%)	0	0	0	0	0
시도비(0.00%)	0	0	0	0	0
지방비(0.00%)	0	0	0	0	0
기타	0	0	0	0	0
총규모(백만원)	2,880	1,440	1,440	1,440	1,440

신청(현금)  신청(비현금)

신청(비현금)  신청(현금)

9) 소요자원(시비, 도비 등)

<p>영양사업</p> <p>영양사업추진근로자 정기휴일 지원 협의요청서(별첨).pdf</p> <p>영양사업추진근로자 정기휴일 지원사업.pdf</p> <p>사회보장위원회 검토결과</p> <p>협의요청기관 제의의 최신의견</p>	<p>10) 사업의 타당성 (기존 협의요청서 2번 항목 8번 항목)</p> <p>11) 긴급사유소명서 (법정기한을 지나서 요청할 경우 협의를 요청할 수 없었던 이유,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 2024년에 꼭 시행해야 하는 이유 등)</p>
--	--

### # 자주 묻는 질문 1

#### 1) 협의 요청이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해요

- ▶ 1번부터 11번까지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협의요청을 클릭하여 온나라 내부 문서로 연계기간한 후 공문 결재 처리를 끝냄.
  - ▶ 이후 신설, 변경 협의요청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협의요청'으로 나와 있으면 제대로 요청된 것임
- ※ 온나라 내부 문서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직권결재 처리하여 결재 완료(복지부로 발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② 지자체에서 [신설협의를요청] 버튼 클릭(제도(사업)의 예상 시기를 2013년 자료가 있으면 2013년, 자료가 없으면 2018년으로 설정함, **2013년, 2018년으로 변경해야 아래 붉은색 박스체크한 연도도 같이 변경됨**)
- ③ “신설 협의요청 정보 등록” 화면에서 변경전 사업내용으로 협의요청서 정보 등록 후 [협의요청] 버튼 클릭
- ④ [전자결재기안팝업] 기안내용 작성 및 전송
- ⑤ 신설·변경협의 요청목록 조회 후 해당 사업의 진행상태가 “협의요청결재”로 변경 확인
- ⑥ 신설·변경협의 요청목록 조회 후 해당 사업명 클릭하여 상세조회 화면에서 [직권결재 [승인] 버튼 클릭하여 직권결재 사유 ex)2013년 이전 시행사업으로 새로이 요청 등] 입력 후 [승인처리]
  - ※ **온나라 문서 결재 중 수신 아이디는 행복이음 시스템 자료를 입력하는 공무원 본인 온나라 아이디임(팀장, 과장 아이디 아님)**
- ⑦ 복지부 안건 담당자가 **협의이력없음**으로 승인하면 검색되지 않았던 사업이 조회됨(**지자체 조회 가능**)
- ⑧ 신설된 사업명을 조회하여 **변경사업**으로 다시 협의 신청
  - ※ **주의사항(해당 요청을 지자체에서 하기 전에 반드시 캐시를 지운 후 수행해야 오류없이 절차가 진행됨, 캐시를 지우지 않을 경우 '빈 데이터가 노출됩니다'등의 오류 메시지 발생)**

공통	웹 브라우저 설정 확인	<p>(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처리)</p> <p>- 오류 발생시 웹 브라우저 설정 확인 및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처리 후 차세대 시스템에 접속</p> <p>(구글 Chrome) 설정 ⇒ 개인정보및보안 ⇒ 인터넷사용기록삭제 ⇒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 선택 ⇒ [인터넷사용기록삭제] 버튼클릭</p> <p>- (단축키) Ctrl + Shift + Del &gt; 인터넷사용기록삭제창</p> <p>(MS Edge) 설정 ⇒ 개인정보, 검색및서비스 ⇒ 검색데이터지우기[자율항목 선택] 버튼클릭 ⇒ 시간범위 모든시간 설정, ‘캐시된이미지및파일’선택 ⇒ [지금 지우기] 버튼클릭</p> <p>- (단축키)Ctrl + Shift +Del &gt; 검색데이터지우기창</p>
----	--------------	---

## # 자주 묻는 질문 2

- 2) 변경 철회한 이후 요청이 되지 않는 경우
  - 철회 된 협의요청건을 변경요청 진행하지 말고 기존 변경대상 협의건을 선택하여 변경요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 3) 도비 사업을 시 담당자가 변경 요청하려는 경우
  - 해당 사업은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도 담당자가 변경 요청 가능한 것으로 시 담당자는 변경 요청이 불가능함
- 4) 파일 첨부가 되지 않는 경우
  - 파일명에 특수기호가 있거나, 파일용량이 큰 경우, DRM(문서암호화) 설정이 된 경우에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파일명 수정, 용량축소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전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 사전 이행 요청
  - 「사회보장급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 행복e음 활용 승인 신청 가능
  - 이에,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결과 포함하여 요청
- \* 신설·변경 협의요청서(서식1,2) 제출(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협의완료 및 협의결과 통보(서식3) → 협의결과를 첨부하여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서 식

---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 신설 제도) .....	65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 변경 제도) .....	75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	87
[서식 4] 회신 양식 .....	89
[서식 5] 재정운용계획서 .....	90
[서식 6] '조건부 협의완료' 성과 평가계획서 .....	93
[서식 7] 긴급사유 소명서 작성 양식 .....	97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신설 제도(사업)명 <1~7번까지 작성 필수>**

**1. 제도(사업) 현황 및 체크리스트** ※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협의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설														
협의요청일/ 시행예정일	협의요청일(0000.00.00) /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0000.00.00)														
작성자	○○부/○○시도 (○○시군구)	○○○과	성명	연락처	이메일										
근거	중앙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조례 <input type="checkbox"/> 훈령 <input type="checkbox"/> 예규 <input type="checkbox"/> 고시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법률 <input type="checkbox"/>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시도 조례/규칙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조례 규칙 <input type="checkbox"/> 지침(방침)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목적 (신설필요성)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사업목적과 신설의 필요성 등을 모두 기재할 것)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건강 <input type="checkbox"/> 안전 <input type="checkbox"/> 문화 및 여가 <input type="checkbox"/> 법률 및 권익보장 <input type="checkbox"/> 정신적 건강 <input type="checkbox"/> 보육 및 교육 <input type="checkbox"/> 관계 <input type="checkbox"/> 돌봄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구유형	<input type="checkbox"/> 신혼부부가구 <input type="checkbox"/> 1인가구 <input type="checkbox"/> 조손가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가구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가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구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구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생애주기	<input type="checkbox"/> 구분없음(전생애)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청년 <input type="checkbox"/> 중장년 <input type="checkbox"/> 노년													
	예산분류 <small>* 다중선택 불가</small>	중앙	○ 일반지방행정(010) ○ 공공질서 및 안전(020) ○ 통일외교(030) ○ 국방(040) ○ 교육(050) ○ 문화 및 관광(060) ○ 환경(070) ○ 사회복지(080) ○ 보건(090) ○ 농림수산(10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 교통 및 물류(120) ○ 통신(130) ○ 국토 및 지역개발(140) ○ 과학기술(150)												
	지자체	○ 일반공공행정(010) ○ 공공질서 및 안전(020) ○ 교육(050) ○ 문화 및 관광(060) ○ 환경(070) ○ 사회복지(080) ○ 보건(090) ○ 농림수산(10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 교통 및 물류(120) ○ 국토 및 지역개발(150) ○ 과학기술(150)													
성과지표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20%;">2023</td> <td style="width: 20%;">2024</td> <td style="width: 20%;">2025</td> <td style="width: 20%;">2026</td> <td style="width: 20%;">2027</td> </tr> <tr>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r> </table>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구 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선정기준	(자격기준) <input type="checkbox"/> 취득 수급자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적자격 <input type="checkbox"/> 자체소득재산 기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 자격요건 등																																																	
	대상규모	<input type="checkbox"/> 개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024</td> <td>2025</td> <td>2026</td> <td>2027</td> <td>2028</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가구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024</td> <td>2025</td> <td>2026</td> <td>2027</td> <td>2028</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개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024</td> <td>2025</td> <td>2026</td> <td>2027</td> <td>2028</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024</td> <td>2025</td> <td>2026</td> <td>2027</td> <td>2028</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기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024</td> <td>2025</td> <td>2026</td> <td>2027</td> <td>2028</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2024	2025	2026	2027	2028						2024	2025	2026	2027	2028						2024	2025	2026	2027	2028						2024	2025	2026	2027	2028						2024	2025	2026	2027	2028				
2024	2025	2026	2027	2028																																															
2024	2025	2026	2027	2028																																															
2024	2025	2026	2027	2028																																															
2024	2025	2026	2027	2028																																															
2024	2025	2026	2027	2028																																															
지원 내용	지원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지급 <input type="checkbox"/> 현금대여(용자) <input type="checkbox"/> 현물지급 <input type="checkbox"/> 현물대여 <input type="checkbox"/> 감면 <input type="checkbox"/> 전자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실물바우처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지역화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원주기 <small>* 다중선택 불가</small>	<input type="radio"/> 일 <input type="radio"/> 주 <input type="radio"/> 월 <input type="radio"/> 분기 <input type="radio"/> 반기 <input type="radio"/> 년 <input type="radio"/> 수시 <input type="radio"/> 일회성 <input type="radio"/> 부정기 <input type="radio"/> 기타 ( )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등																																																	
전달 체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조사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구 분		주요 내용										
	결정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급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후 관리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요 재원	총규모	총_____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024</td> <td>2025</td> <td>2026</td> <td>2027</td> <td>2028</td> </tr> <tr> <td>백만원</td> <td>백만원</td> <td>백만원</td> <td>백만원</td> <td>백만원</td> </tr> </table>	2024	2025	2026	2027	2028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재원별 규모	<input type="checkbox"/> 국비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시도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기금출자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민간재원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교육청특별 회계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기타											
	지역사회보장 계획포함 여부	<input type="checkbox"/> 포함 (추진전략번호:    세부사업번호:    중점사업: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 2. 사업의 타당성

###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 제도의 신설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 제도(사업) 도입 취지·목적과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

#### 작성방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 (예, 사전 연구용역 결과 등)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한정된 자원 내 정책적 우선순위로 검토된 사항, 사회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및 세부목표 기술
-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기술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 ② 지역의 특수성

- 제도 신설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 작성방법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지역적 배경이나 경위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급성 및 차별성 기술 (통계적 근거 등 객관적 자료 제시)

### 3. 기존제도와와의 관계

#### 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해당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
-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목표에 기반한 해당 과제 추진 여부

#### 작성방법

-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내용을 기재

####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신설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검토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광역·기초 지자체 내 제도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

#### 작성방법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 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누락·편중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제도의 신설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 ③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회보험은 국가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 지원 등

-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중앙-지방 간 효율적 역할 분담 등 기대효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 4.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기존 제도와 유사·중복·편중·누락여부, 대상자 간 형평성 고려 등 대상자 선정기준(제외대상기준 포함)의 적절성 검토
- 신설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선정의 근거 및 적절성 검토

##### 작성방법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신설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 5.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제도의 신설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편의성 등 검토
  -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마련 계획 등
    - 특히, 중앙행정기관 사업 신설 시 읍면동 복지담당인력 활용이 필요할 경우, 추가 인력 확보 방안 또는 임시 인력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필수

### 작성방법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제도 신설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인력 확보 방안 등 제시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 ②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 신설 제도의 자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원조달 방안을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설 제도에 대한 재정 부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 자료 첨부 (예, 지방재정부담심의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 광역-기초 자원 분담 사업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협의 여부 및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작성방법**

- 신설 제도 추진을 위한 구체적 재정 산출근거 및 조달 계획,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진단 등 기술
- 신설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제도의 신설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자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자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 신설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광역-기초 재정 분담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지방(교육)재정공시 참고

〈 재정 관련 작성 예시 〉

(단위 : %,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 (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

\* 협의요청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 항목 적용(예,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분담 비율 합의 등에 대한 증빙서류(협약서, 공문 등)** 첨부
- 단년도 소요 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연 500억 원 이상, 기초 지자체 연 50억 원 이상인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재정운용계획서(서식7) 작성 제출 필수**



## 6.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주민수요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참여 및 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여부
-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 등을 위한 노력

### 작성방법

- 신설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 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또는 미반영 사항 후 반영 계획 및 미반영 사유 기술
- 관할지역 내 주민의 복지 요구 및 수요 등을 기술
- 지역주민의 참여방법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노력 제시 (주민 공청회, 간담회, 원탁회의, 주민 만족도 조사, 전문가 FGI, 주민참여 아이디어 공모, 민간기관 실무자 의견 수렴,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등)

## 7. 사후 성과관리 계획

-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 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
- 사업 목표 달성도 관리 및 성과지표 활용 방법 등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 기술

### 작성방법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선정 근거),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등 기술
  - \* (중앙부처)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 등에 따른 성과계획서
  - \* (지자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성과계획서
- 성과지표 측정 방법 및 주기, 결과 활용 방안 등 사후 사업 평가 활용 계획 등 기술

## 8. 참고자료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 작성방법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② 변경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변경 제도(사업)명 <1~7번까지 작성 필수>**

**1. 제도(사업) 현황 및 사업개요** ※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협의구분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__회)														
협의요청일/ 시행예정일	협의요청일(0000.00.00) /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0000.00.00)														
작성자	○○부/○○시도 (○○시군구)	○○○과	성명	연락처	이메일										
근거	중앙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조례 <input type="checkbox"/> 훈령 <input type="checkbox"/> 예규 <input type="checkbox"/> 고시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법률 <input type="checkbox"/>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시도 조례/규칙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조례 규칙 <input type="checkbox"/> 지침(방침)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목적 (변경필요성)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사업목적과 변경의 필요성 등을 모두 기재할 것)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건강 <input type="checkbox"/> 안전 <input type="checkbox"/> 문화 및 여가 <input type="checkbox"/> 법률 및 권익보장 <input type="checkbox"/> 정신적 건강 <input type="checkbox"/> 보육 및 교육 <input type="checkbox"/> 관계 <input type="checkbox"/> 돌봄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구유형	<input type="checkbox"/> 신혼부부가구 <input type="checkbox"/> 1인가구 <input type="checkbox"/> 조손가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가구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가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구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구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생애주기	<input type="checkbox"/> 구분없음(전생애)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청년 <input type="checkbox"/> 중장년 <input type="checkbox"/> 노년													
	예산분류 <small>* 다중선택 불가</small>	중앙	○ 일반지방행정(010) ○ 공공질서 및 안전(020) ○ 통일외교(030) ○ 국방(040) ○ 교육(050) ○ 문화 및 관광(060) ○ 환경(070) ○ 사회복지(080) ○ 보건(090) ○ 농림수산(10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 교통 및 물류(120) ○ 통신(130) ○ 국토 및 지역개발(140) ○ 과학기술(150)												
	지자체	○ 일반공공행정(010) ○ 공공질서 및 안전(020) ○ 교육(050) ○ 문화 및 관광(060) ○ 환경(070) ○ 사회복지(080) ○ 보건(090) ○ 농림수산(10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 교통 및 물류(120) ○ 국토 및 지역개발(150) ○ 과학기술(150)													
성과지표	이전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20%;">2019</td> <td style="width: 20%;">2020</td> <td style="width: 20%;">2021</td> <td style="width: 20%;">2022</td> <td style="width: 20%;">2023</td> </tr> <tr>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r> </table>				2019	2020	2021	2022	2023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2019	2020	2021	2022	2023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구 분		주요 내용					
		이후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2024	2025	2026	2027	2028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자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자격기준) <input type="checkbox"/> 취득 수급자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적자격 <input type="checkbox"/> 자체소득재산 기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 자격요건 등				
		이후	(자격기준) <input type="checkbox"/> 취득 수급자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적자격 <input type="checkbox"/> 자체소득재산 기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 자격요건 등				
	대상규모	이전	<input type="checkbox"/> 개인				
			2019	2020	2021	2022	2023
			<input type="checkbox"/> 가구수				
			2019	2020	2021	2022	2023
<input type="checkbox"/> 개소							
2019	2020	2021	2022	2023			
<input type="checkbox"/> 개							
2019	2020	2021	2022	2023			
<input type="checkbox"/> 기타( )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규모	이후	<input type="checkbox"/> 개인					
		2024	2025	2026	2027	2028	
		<input type="checkbox"/> 가구수					
		2024	2025	2026	2027	2028	
<input type="checkbox"/> 개소							
2024	2025	2026	2027	2028			

구 분		주요 내용															
			<input type="checkbox"/> 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024</td> <td>2025</td> <td>2026</td> <td>2027</td> <td>2028</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2024	2025	2026	2027	2028					
			2024	2025	2026	2027	2028										
			<input type="checkbox"/> 기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024</td> <td>2025</td> <td>2026</td> <td>2027</td> <td>2028</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2024	2025	2026	2027	2028					
			2024	2025	2026	2027	2028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input type="checkbox"/> 현금지급 <input type="checkbox"/> 현금대여(용자) <input type="checkbox"/> 현물지급 <input type="checkbox"/> 현물대여 <input type="checkbox"/> 감면 <input type="checkbox"/> 전자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실물바우처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지역화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후	<input type="checkbox"/> 현금지급 <input type="checkbox"/> 현금대여(용자) <input type="checkbox"/> 현물지급 <input type="checkbox"/> 현물대여 <input type="checkbox"/> 감면 <input type="checkbox"/> 전자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실물바우처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지역화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원주기 <small>* 다중선택 불가</small>	이전	<input type="radio"/> 일 <input type="radio"/> 주 <input type="radio"/> 월 <input type="radio"/> 분기 <input type="radio"/> 반기 <input type="radio"/> 년 <input type="radio"/> 수시 <input type="radio"/> 일회성 <input type="radio"/> 부정기 <input type="radio"/> 기타 ( )														
		이후	<input type="radio"/> 일 <input type="radio"/> 주 <input type="radio"/> 월 <input type="radio"/> 분기 <input type="radio"/> 반기 <input type="radio"/> 년 <input type="radio"/> 수시 <input type="radio"/> 일회성 <input type="radio"/> 부정기 <input type="radio"/> 기타 ( )														
	지원수준	이전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등														
이후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등															
전달 체계	신청	이전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이후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조사	이전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구 분		주요 내용	
		이후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결정	이전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후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급	이전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후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후 관리	이전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구 분		주요 내용															
		이후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요 자원	총규모	이전	총_____백만원 <table border="1"> <tr> <td>2019</td> <td>2020</td> <td>2021</td> <td>2022</td> <td>2023</td> </tr> <tr> <td>백만원</td> <td>백만원</td> <td>백만원</td> <td>백만원</td> <td>백만원</td> </tr> </table>					2019	2020	2021	2022	2023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자원별 규모	<input type="checkbox"/> 국비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시도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기금출자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민간재원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교육청특별 회계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기타																
	총규모	이후	총_____백만원 <table border="1"> <tr> <td>2024</td> <td>2025</td> <td>2026</td> <td>2027</td> <td>2028</td> </tr> <tr> <td>백만원</td> <td>백만원</td> <td>백만원</td> <td>백만원</td> <td>백만원</td> </tr> </table>					2024	2025	2026	2027	2028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자원별 규모	<input type="checkbox"/> 국비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시도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기금출자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민간재원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교육청특별 회계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기타															
지역사회보장 계획포함 여부		<input type="checkbox"/> 포함 (추진전략번호:    세부사업번호:    중점사업: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 2. 사업의 타당성

###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사업 변경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등 사업 변경 추진의 필요성
-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 제도의 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 작성방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 (예, 사전 연구용역 결과 등)
- 제도 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한정된 자원 내 정책적 우선순위로 검토된 사항, 사회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및 세부목표 기술
-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기술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 ② 지역의 특수성

- 제도 변경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 작성방법

-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지역적 배경이나 경위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급성 및 차별성 기술  
(통계적 근거 등 객관적 자료 제시)



### 3. 기존제도와와의 관계

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해당 사회보장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
-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목표에 기반한 해당 과제 추진 여부

**작성방법**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내용을 기재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검토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내 제도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작성방법**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 제도의 분석을 통해 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누락·편중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제도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③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회보험은 국가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 지원 등

-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중앙-지방 간 효율적 역할 분담 등 기대효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 4.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기존제도와 유사·중복·편중·누락여부, 대상자 간 형평성 고려 등 대상자 선정기준(제외대상기준 포함)의 적절성 검토
- 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선정의 근거 및 적절성 검토

##### 작성방법

- 제도 변경의 경우 모든 항목을 현행 제도와 변경 제도를 비교하여 제시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변경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 5.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편의성 등 검토
-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마련 계획 등

#### 작성방법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제도 변경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 ②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 변경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변경 제도에 대한 재정 부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 자료 첨부(예, 지방재정부담심 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 광역-기초 재원 분담 사업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협의 여부 및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작성방법**

- 변경 제도 추진을 위한 구체적 재정 산출근거 및 조달 계획,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진단 등 기술
- 변경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제도의 변경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자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제도 변경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 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광역-기초 재정 분담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지방(교육)재정공시 참고

〈 재정 관련 작성 예시 〉

(단위 : %,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 (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

\* 협의요청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 항목 적용(예,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분담 비율 합의 등에 대한 증빙서류(협약서, 공문 등)** 첨부
- 단년도 소요 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연 500억 원 이상, 기초 지자체 연 50억 원 이상인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재정운용계획서(서식7) 작성 제출 필수**

## 6.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주민수요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참여 및 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여부
-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 등을 위한 노력

### 작성방법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사회보장기본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또는 미반영 시 향후 반영 계획 및 미반영 사유 기술
- 관할지역 내 주민의 복지 요구 및 수요 등을 기술
- 지역주민의 참여방법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노력 제시 (주민 공청회, 간담회, 원탁회의, 주민 만족도 조사, 전문가 FGI, 주민참여 아이디어 공모, 민간기관 실무자 의견 수렴,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등)

## 7. 사후 성과관리 계획

-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 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
- 사업 목표 달성도 관리 및 성과지표 활용 방법 등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 기술

### 작성방법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선정 근거),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등 기술
  - \* (중앙부처)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 등에 따른 성과계획서
  - \* (지자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성과계획서
- 성과지표 측정 방법 및 주기, 결과 활용 방안 등 사후 사업 평가 활용 계획 등 기술

## 8. 참고자료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 작성방법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보건복지부 ⇒ 협의요청기관, 관련부처(서), 지방의회 사무처 등)

**(신설 또는 변경)제도(사업)명, 협의요청기관명**

〈협의완료〉

검토결과	협의완료
검토의견	<p>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p> <p>- 그 외 권고사항 등</p>

〈조건부 협의완료〉

검토결과	협의완료 (조건부)
필수검토사항	<p>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u>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협의완료(최종 ‘협의완료’ 절차 이행 필요)</u></p> <p>- 일정기간 사업 시행 이후 성과평가 결과 제출 시 필수 반영 사항 등</p>

〈재협의를〉

검토결과	재협의를
필수검토사항	<p>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재협의를’</p> <p>- <u>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기준에 따른 사업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u>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p>

〈반려〉

검토결과	반려 (협의대상 아님)
검토의견	<p>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및 협의 운용지침 상 ‘협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반려 처리함</p> <p>* 구체적 반려 사유</p>



【서식 4】 회신 양식 (협의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신설 또는 변경)제도(사업)명, 협의요청기관명**

사업내용	사업개요 작성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한 협의요청기관의 수용여부 표시 <input type="checkbox"/> 수용 (보건복지부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보완 후 재제출) <input type="checkbox"/> 일부 수용 (일부 수용이 어려운 이유 등 근거자료 제출)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해 수용이 어려운 이유 등 근거자료 제출) <input type="checkbox"/> 사업미추진
복지부 검토의견	보건복지부 협의 검토 결과 내용
협의요청기관 회신의견	보건복지부 협의 검토 결과 내용에 대한 협의요청기관의 회신 의견

**【서식 5】 재정운용계획서 (협의요청기관(지자체만 해당) ⇒ 보건복지부)**

**‘(협의요청기관명)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재정운용계획서**

1.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소요재원 규모 및 세부 산출내역
2. 지자체별 (교육)재정 공시 자료 (관련자료 첨부)
  - \* 일반회계 결산기준
3.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계획
  - ☞ 해당 사업 시행(2024년 시행 가정)을 위해 가용한 자체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 \*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별 교육재정공시 자료 등에 따라 일부 양식 수정 가능

○ 자체 사회보장사업 예산

구분	재정여건		사회보장예산 비율 (일반회계 기준, %, 억원)				
	재정 자립도 (%)	재정 자주도 (%)	전체 예산 (a)	사회 복지 예산 (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c)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c/b*100)
시행 직전 3개 연도							
2024							
2023							
2022							

\* 사회복지(교육청 교육복지사업)예산 중 국비(또는 광역)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

구분	재정여건		신설·변경하는 협의요청사업분야 예산 비율 (일반회계 기준, %, 억원)				
	재정 자립도 (%)	재정 자주도 (%)	전체 예산 (a)	사회 복지 예산 (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c)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c/b*100)
시행 직전 3개 연도							
2024							
2023							
2022							

\* '사회복지' 외 협의요청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 항목 적용(예,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

○ 재원조달 전망

구분	연도별 재정여건 변화 및 전망 (지방세입,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구성별 변화 전망)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변동액	변동률
지방세입								
교부세								
...								

\* 변동액, 변동률은 '24년과 '28년 기준으로 작성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사회보장사업) 투입규모

구분	주요 국고보조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변화 및 전망 (최근 5년 예산규모 상위 10개 사업)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변동액	변동률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								

\*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해당 지자체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금액

\* 변동액, 변동률은 '24년과 '28년 기준으로 작성

○ 자체 사회보장사업 규모 및 운영계획

\*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100% 사회보장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10개 사업(최근 5년)

사업명	연간 총 예산규모 (억원)	향후 사업 확대 등 변경 계획
자체사업 1		
자체사업 2		
자체사업 3		
...		

구분	주요 사회보장 자체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변화 및 전망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변동액	변동률
자체사업 1							
자체사업 2							
자체사업 3							
...							

\* 변동액, 변동률은 '24년과 '28년 기준으로 작성

4.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매칭사업 추진 시 재정 분담 협의내용  
(광역 사업만 해당하며, 관련 내용 작성)

\* 해당 광역 지자체(교육청 포함)의 시군과 재정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10개 사업(최근 5년)

사업명	연간 총 예산규모(억원)	광역(교육청 포함)- 기초 분담비율	향후 사업 확대 등 변경 계획
사업 1		광역 00%, 교육청 00%, 기초 00%	
사업 2			
사업 3			
...			

구분	주요 사회보장 자체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변화 및 전망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변동액	변동률
자체사업 1							
자체사업 2							
자체사업 3							
...							

\* 변동액, 변동률은 '24년과 '28년 기준으로 작성

※ 위 작성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의 예산담당자 확인 후 아래내용 작성요망

- 지자체 예산담당 부서명 :
-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 :

【서식 6】 ‘조건부 협의완료’ 성과 평가계획서 (협의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협의요청기관) 사업명**

**1.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협의결과		‘조건부 협의완료’ (수신날짜)					
추진경과		제도 시행일 등 현재까지 제도 추진 경과 및 변동 사항 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제외기준 등					
	대상규모	대상자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연도별 제시(명/가구)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지역화폐),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인력 및 기관	-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 조직 및 인력 투입 등 관련 실적					
집행 실적	소요자원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도별/분기별/반기별 등 지급주기를 구분하여 제시(구체적 산출근거 포함), 연도별 재정확보/조달 방법 제시 등</li> <li>광역-기초 분담 등 자원 유형 및 규모(비율)</li> <li>집행률 (연도별 예산편성액 대비 실집행액 비율)</li> </ul>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예산편성액					
		실집행액					
		집행률(%)					
		재원분담비율					
		재원조달방법					

구 분	주요 내용							
재정여건 및 현황	<b>&lt;연도별 예산규모&gt;</b> (단위 : 백만원, 가구)							
	구분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예산							
	대상자수							
	<b>&lt;평가연도 기준 최근 3년 재정여건&gt;</b> (단위: %, 억원)							
	구분	재정여건			사회보장예산 비율			
	연도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전체예산 (a)	사회복지 예산 (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c)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c/b*100)
구분	재정여건			해당분야*예산 비율				
연도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전체예산 (a)	○○ 분야 예산 (b)	○○분야 예산비율 (b/a*100)	○○분야 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c)	○○분야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c/b*100)	
* 일반회계 결산 기준(평가연도는 예산 기준) * 자체사업 :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 * 해당분야 : 조건부 협의완료 통보 받은 분야의 사업(예:농업, 청년, 의료 등) <b>&lt;향후 자원 확보 방안&gt;</b> *첨부표 작성								
성과평가 추진여부	복지부 협의결과에 따른 자체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시행 여부 등 (예, 성과평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확보 및 지역연구기관 연계 등)							
협의결과 반영여부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제안된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반영 여부 * 조건부 협의결과 통보시 기재된 '필수검토사항' 중심으로 기술하되, 협의시 계획된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결과 등을 필수 포함 성과지표 등은 지자체에서 설정한 성과지표를 사업목적(예:소득안정, 건강개선, 인구유출 최소화, 공익적 가치 증진) 등에 부합하도록 재설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가능한 지표로 수정보완하여 적용 (집행률, 참여율, 만족도 등은 지양)							
기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민원 대응, 정책 홍보, 제도 개선, 사후 성과 관리(부정수급 방지 등) 등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 추진 실적							

## 2. 사업평가계획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지표 설정	사업 도입 전 (협의 요청 당시 계획)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년차</td> <td>2년차</td> <td>3년차</td> <td>4년차</td> <td>5년차</td> </tr> <tr>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r> </table>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사업 도입 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성과 지표</th> <th>구분</th> <th>1 년차</th> <th>2 년차</th> <th>3 년차</th> <th>4 년차</th> <th>5 년차</th> <th>목표치 산출근거</th> <th>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th> <th>자료 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td> <td>목표치</td> <td></td><td></td><td></td><td></td><td></td> <td rowspan="3"></td> <td rowspan="3"></td> <td rowspan="3"></td> </tr> <tr> <td>실적</td> <td></td><td></td><td></td><td></td><td></td> </tr> <tr> <td>달성율(%)</td> <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rowspan="3"></td> <td>목표치</td> <td></td><td></td><td></td><td></td><td></td> <td rowspan="3"></td> <td rowspan="3"></td> <td rowspan="3"></td> </tr> <tr> <td>실적</td> <td></td><td></td><td></td><td></td><td></td> </tr> <tr> <td>달성율(%)</td> <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p>※ (참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 VI.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p.부록6. 정책영역별 대표 성과지표 및 사업내요별 세부지표 예시)</p>										성과 지표	구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치									실적						달성율(%)							목표치									실적						달성율(%)					
성과 지표	구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치																																																																
	실적																																																																
	달성율(%)																																																																
	목표치																																																																
	실적																																																																
	달성율(%)																																																																
평가 수행 방법	평가 (조사) 방법	1. 2. 3.																																																															
	수행 기관																																																																
	추진 여건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재정 및 인력 확보 현황 등																																																															
평가결과 활용계획		사업 목표 달성 및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평가결과 활용 계획																																																															

〈첨부 : 재원확보 방안〉

○ ○○○(지역명)의 재원 대책

- (자체재원 확보) 확보 계획 기술 (예, 기금 용자, 지방채 발행 등 구체적 재원 조달 방법 및 재원별 규모 등을 포함하여 기술)

〈평가연도 기준 5년 자체재원 확보 가능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지방세 및 교부세					
그 외 지역투자 자체수입 등					

\* 성과평가 연도가 '23년인 경우 '24년부터 '28년까지 5년 작성

- (국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영향) 사회복지 관련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증감 예상액, 자체 재원 확보 가능액 등을 기술

〈'24년 대비 '28년의 국비보조사업(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증가 예상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 연도별 재정추계 시 명확한 산출근거(대상규모, 지원수준 및 기간, 매칭비율 등)에 따라 추계하고 향후 정부 지원 확대 계획이 있는 경우(예,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적용하여 추계 (예를 들어, 전년도 대비 10% 증액 예상 등 불명확한 산출근거 지양)

○ 지방세 징수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금 액					
증가액					

○ 보통교부세 징수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금 액					
증가액					

○ 그 외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추진 계획



【서식 7】 긴급사유 소명서 작성 양식 - (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신설 또는 변경)제도(사업)명, 협의요청기관명**

협의 요청일		사업계획 확정일		사업시행 예정일	
긴급사유	주민 대상 긴급 위기 대응 필요성, 시급성 등 사유 기술				
사업 시기 유예 등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및 대응계획	사업 시행 예정일 이후로 사업이 유예될 경우 예상되는 주민 피해 및 파급효과 등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협의요청기관의 대응계획 기술				
기타 의견	기타 긴급사유 소명을 위한 의견				

---

#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부 록

---

[부록 1] 2023년 협의완료(철회·반려·협의종료 제외) 안건 (2023.12.31. 기준) .....	101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협의대상목록(2023.12.31. 기준) .....	136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	148
[부록 4]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	149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	165
[부록 6] 정책영역별 대표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별 세부지표 예시 .....	176



【부록 1】

2023년 협의완료(철화·반려·협의종료 제외) 안건(2023.12.31. 기준)

연번	협의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협의완료
2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협의완료
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4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5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복지급여)	협의완료
6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퇴소 자립지원 수당	협의완료
7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협의완료
8	고용노동부	○		고령자 재취업장려금	협의완료
9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협의완료
10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협의완료
11		○	청년내일채움공제	협의완료	
12	교육부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협의완료
13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협의완료
14		○	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협의완료	
15	국토교통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협의완료
16	농림축산식품부		○	천원의 아침밥	협의완료
17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협의완료
18			○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협의완료
19	방송통신위원회		○	시각·청각장애인TV 보급	협의완료
20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협의완료
21	환경부		○	취약계층 어린이 환경성질환 전자바우처 지원 사업	협의완료
22	강원		○	청년 취업안정장려금 지원	협의완료
23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	협의완료
2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협의완료
25			○	산후조리비용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연번	협의를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를결과		
26	강원도 (본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27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	협의완료		
28		○		공영장려 지원 사업	협의완료		
29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협의완료		
3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31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협의완료		
32		강원도교육청	○		학생 진로활동지원금	협의완료	
33		고성군	○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협의완료	
34		동해시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협의완료	
35			○		동해시 공영장려 지원 조례	협의완료	
36	강원	삼척시	○		저소득층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협의완료	
37			○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협의완료	
38			○		책꾸러미 배부사업	협의완료	
39			○		장애인콜택시 요금 무료 지원-) 나눔콜택시 요금무료지원(변경)	협의완료	
40			○		상하수도 요금지원사업	협의완료	
41				○	어르신 목욕비 확대 지원사업	협의완료	
42			○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협의완료 (조건부)	
43			○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지원	협의완료	
44			속초시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협의완료
45				○		어르신(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	협의완료
46	○			장수축하금 지급	재협의 후 완료		
47	양구군	○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 무상지원사업	협의완료		
48	양양군	○		독거노인 AI 반려로봇 지원	협의완료		
49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협의완료		
50	영월군	○		청년 주거비 지원	협의완료		
51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협의완료		
52		○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사업	협의완료		
53		○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54	원주시	○		산후조리비 지원	재협약 후 완료	
55		○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원주시 추가지원	협약완료	
56	인제군	○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협약완료	
57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관리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58		○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협약완료	
59		○		정신질환자 의료(치료)비 지원	협약완료	
60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61		정선군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62	철원군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협약완료	
63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지원	협약완료	
64	춘천시		○	한방난임 지원	협약완료	
65		○		산후조리비 지원	협약완료	
66		○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	협약완료	
67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	협약완료	
68		○		춘전형 일자리 안심공제	협약완료 (조건부)	
69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70		태백시	○		취약계층 생활안전민원 처리	협약완료
71			○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	협약완료
72				○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	협약완료
73			○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 사업	재협약 후 완료
74	평창군	○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75		○		치매환자 조호물품 연장 지원	협약완료	
76		○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77		○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재협약 후 완료	
78	홍천군	○		만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협약완료	
79		○		효행장려수당 지급	재협약 후 완료	
80		○		난임부부 시술비 및 교통비 지원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연번	협의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81	강원		○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82		화천군	○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 사업(전화 및 독촉)	협의완료	
83			○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협의완료	
84		횡성군	○	65세 이상 노인, 초·중·고등학생 버스 무료이용 지원 사업	협의완료	
85				○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협의완료
86				○	장수축하금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87				○	횡성군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88			○	태아 및 출생아 민영건강보험료 지원	협의완료	
89	경기	경기도 (본청)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협의완료
90				○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협의완료
91				○	장애인활동지원 도 자체 추가 지원	협의완료
92				○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협의완료
93				○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협의완료
94				○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협의완료
95				○	장애인 기회소득	협의완료 (조건부)
96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협의완료
97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98				○	도비 장애수당 지원 사업	재협의 후 완료
99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100				○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행복밥상	협의완료
101				○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운영	협의완료
102				○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103				○	장애인 기회소득(사업량 확대)	협의완료 (조건부)
104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협의완료
105				○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협의완료
106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107	고양시		○	청년 주거금융지원	협약완료	
108		○		청년 취업지원	협약완료	
109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협약완료	
110		과천시		○	만 9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11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협약완료
112			○		과천시 활동지원 추가 지원	협약완료
113			○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사업	협약완료
114				○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재협의 후 완료
115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협약완료
116		광명시		○	효행장려수당 지원사업	협약완료
117			○		아이조아 병병가 지원 사업	협약완료
118			○		광명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119	○			100세 축하금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120	○			저소득 어르신 상조서비스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121			○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재협의 후 완료	
122			○	가족돌봄 청년 지원사업	협약완료	
123	광주시		○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재협의 후 완료
124			○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125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협약완료
126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광주형)	협약완료	
127	구리시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협약완료	
128		○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협약완료	
129			○	구리시 다자녀가구 지원(지역화폐)(변경)	협약완료	
130			○	다자녀가구 지원(어린이집 입소료)	협약완료	
131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132			○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연번	협의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33	경기	○		어르신 교통비 지원	협의완료		
134		○		난임치료 확대 지원	협의완료		
135		군포시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136			○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137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아동청소년과로 변경)	협의완료	
138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학자금 상환 지원사업	협의완료	
139			김포시		○	장애인활동지원 김포시 추가지원 사업	협의완료
14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141		남양주시	○		학교 위생용품 및 물품 지원	협의완료	
142			○		청년 드림업사업	협의완료	
143		동두천시	○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협의완료	
144			○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협의완료	
145				○	산후조리비 지원(변경)	협의완료	
146			○		청소년 복지지원금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147			부천시	○		부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협의완료
148		○			부천 청년 사진 Dream(증명사진지원) 사업	협의완료	
149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150		○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지원	협의완료	
151		○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152		사천시	○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153		성남시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사업	협의완료	
154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155				○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156				○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협의완료	
157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협의완료	
158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	협의완료	
159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160			○		면접키트 지원사업	협의완료	
161	○			대중교통(버스) 이용 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162	○			청년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163	경기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	협약완료		
164		○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	협약완료		
165		○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운영	협약완료		
166		수원시	○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	협약완료	
167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사업	협약완료	
168			○		플랫폼노동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169		시흥시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170		안산시	○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171			○		찾아가는 임신·출산관리 서비스	협약완료	
172				○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지원	협약완료
173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24시간 지원 사업	협약완료
174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완료
175			○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시추가 지원사업	협약완료
176			안성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협약완료
177		○			무상교통 지원사업 (→교통약자 및 미래세대 실교통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178		○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179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협약완료
180		○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협약완료
181				○		청년월세 지원사업	협약완료
182		안양시	○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협약완료	
183	○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협약완료		
184	○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185			○		청년월세 지원사업	협약완료	
186	양주시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신설)	협약완료	
187	여주시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협약완료		
188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협약완료		
189		○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협약완료		
190	오산시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재협약 후 완료		

연번	협의를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91	용인시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협의완료	
192		○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협의완료	
193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청년신용회복 지원사업	협의완료	
194		○		용인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협의완료	
195	의왕시	○		청년 주거독립 지원(이사비 지원)	협의완료	
196	의정부시	○		독거노인 방문목욕	협의완료	
197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198			○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사업	협의완료 (조건부)	
199	경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	협의완료	
200		○		이천시 분만 의료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201		○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개설	협의완료	
202		○		청년취업면접 울케아 사업	협의완료	
203		○		학생 해외연수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204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사업	협의완료	
205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협의완료	
206		○		이천시 청년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207		파주시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208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예외지원)	협의완료
209			○		65세이상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감면	협의완료
21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211			○		청소년교통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212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협의완료
213			○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협의완료	
214	평택시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협의완료	
215		○		청년창업 활동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216		○		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217			○	화장장려금 지원	협의완료	

연번	협약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218	경기	포천시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협약완료	
219			○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협약완료	
220			○	65세이상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221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기 지원	협약완료	
222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포천 미래세대 첫 디딤돌 마련)	협약완료	
223			○	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변경	협약완료	
224			○	초중고 인터넷 수강료 지원	협약완료	
225			○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협약완료	
226			○	장애인활동지원 포천시 자체 지원 사업	협약완료	
227			하남시	○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	협약완료
228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협약완료	
229		화성시	○	무상교통 사업	협약완료	
230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사업	협약완료	
231			○	어민기본소득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232			○	난임치료 확대 지원	협약완료	
233			○	청년면접사진촬영 지원사업	협약완료	
234			○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235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236			○	청년 월세 지원사업	협약완료	
237			○	청년 희망창업 지원	협약완료	
238			경남	거제시	○	전입자 지원
239		○			아동·청소년·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	협약완료
240	○	출산장려금 지급			협약완료	
241	○	자격증 응시료 지원(청년 스펙-UP 지원 사업)			협약완료	
242	○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재협약 후 완료	
243	○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이용료 감면)			협약완료	
244	○	거제 아동수당+(플러스) 사업			재협약 후 완료	
245	○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재협약 후 완료	

연번	협의를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246	경남	거창군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협의완료	
247			○	거창형 청년수당	협의완료	
248			○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	협의완료	
249		경상남도 (본청)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협의완료	
250			○	청년 월세 지원사업	협의완료	
251			○	경남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252			○	분만 진료비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253			○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	협의완료 (조건부)	
254			○	경남 직업계고 꿈디딤(취업준비지원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255			○	60~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협의완료	
256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257			○	임신부 교통비 지급	협의완료	
258			○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259			○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 정리 시범사업	협의완료	
260			경남교육청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협의완료
261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협의완료
262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263		고성군	○	청년부모 '복덩이' 통장	협의완료	
264			○	스펙토리(Spec Factory) 고성취업아카데미 시험응시료 지원	협의완료	
265			○	고성청년패스 사업	협의완료	
266			○	결혼축하금 지원	협의완료	
267			○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운영	협의완료	
268			○	전입세대 재활용 분리수거 꾸러미 지원	재협의 후 완료	
269			○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270			○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협의완료	
271			○	치매검사비(기준초과자) 지원	협의완료	
272			○	청년 동지적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273	○		청년 일자리 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274	경남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협약완료	
275				고3학생 자기학습 개발비 지원	협약완료	
276				○	출산장려금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277				○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협약완료
278				○	둘째아 출산축하 상품권 지원	협약완료
279				○	둘째아 출산축하 상품권 지원	협약완료
280		남해군	○	어르신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	협약완료	
281			○	남해군 마을행복나눔터(우리 마을 행복봉사단) 운영	협약완료	
282			○	초등학생 우유 급식 확대 지원	협약완료	
283		사천시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협약완료	
284			○	장수축하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285		산청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협약완료
286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협약완료
287			○		조손가족 손자녀 특기활동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288			○		다문화가족자녀 헤어컷 비용 지원	재협의 후 완료
289				○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재협의 후 완료
290		양산시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291		의령군	○		전입축하선물지급	협약완료
292			○		장수축하금 지원	협약완료
293			○		청년 시험응시료 지원사업	협약완료
294			○		다자녀가정 수당 지원	재협의 후 완료
295		진주시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협약완료
296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297				○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 지원 사업	협약완료
298		창녕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협약완료
299			○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급	협약완료
300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301			○		신혼부부 건강검진 확대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302			○		생애최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연번	협의를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303	경남	창원시	○	지역대학 신입생「창원 새내기 지원금」사업	협의완료	
304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305			○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협의완료	
306			○	다동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 사업	협의완료	
307			○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308			○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309			○	청년 자격증 시험 취득 응시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310			○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협의완료	
311			○	구직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협의완료	
312			○	청년 내일통장	협의완료	
313			하동군	○	하동 문화예술탐험대	협의완료
314				○	공영장례지원	협의완료
315				○	하동청년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협의완료
316				○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협의완료
317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협의완료
318				○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사업	협의완료
319			함안군	○	어린이·청소년 대중 교통비 감면 사업	협의완료
320		함양군	○	어르신 등 버스무료 이용 사업	협의완료	
321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322		합천군	○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협의완료	
323			○	국가자격증 취득지원사업	협의완료	
324			○	다자녀 안전보험 지원	재협의 후 완료	
325			○	사실상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협의완료	
326			○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327			○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협의완료	
328		경북	경산시	○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	협의완료
329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330				○	난소기능검사 지원사업	협의완료 (조건부)
331			경상북도 (본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332	경상북도 교육청		○	수학여행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333	경주시	○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협약완료
334	구미시	○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협약완료
335		○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	협약완료
336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완료
337		○		청년월세 지원사업	협약완료
338		○		세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지원	협약완료
339		○		임신부 산부인과 교통비 지원	협약완료
340	군위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범위 확대	재협의 후 완료
341		○		난임부부 시술비 대상자 확대 지원	협약완료
342		○		농민수당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343	문경시	○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344			○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협약완료
345			○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	협약완료
346		○		문경시 효행 장려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347		○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협약완료
348		봉화군	○		다문화가정 자립정착금 지원
349	○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재협의 후 완료
350	성주군	○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351	안동시	○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협약완료
352		○		장애인 가족돌봄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353	영덕군	○		효도수당 지원	재협의 후 완료
354	영주시	○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협약완료
355	영천시		○	전입자 지원금 사업	협약완료
356		○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 사업	협약완료
357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협약완료
358		○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	재협의 후 완료
359		○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의를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360	경북	울릉군	○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운영	협의완료	
361		울진군	○	자격증 취득 교육지원 사업	협의완료	
362			○	산림 자격증 취득 교육지원 사업	협의완료	
363			○	울진군 의료원 외래 접수비 감면	협의완료	
364			○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협의완료	
365			○	청도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확대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366		청도군	○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367			○	작고 강한학교 만들기 교육사업 주거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368			○	청도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협의완료	
369		포항시	○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 검사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37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371		광주	광산구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협의완료
372				○	장수노인 지원	협의완료
373				○	청년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협의완료
374			광주광역시 (본청)	○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협의완료
375	○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	협의완료	
376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협의완료	
377	○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	협의완료	
378	○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협의완료	
379	○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급	협의완료	
380	광주광역시 교육청			○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협의완료
381			○	학생 교육비 꿈드림 지원	재협의 후 완료	
382	남구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383	동구		○	임신부와 영유아 가정 이동서비스 「동구맘택시」	협의완료	
384			○	임신부와 영유아 가정 이동서비스 「동구맘택시」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385	광주	복구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협약완료	
386			○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협약완료	
387			○	다문화가족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388			○	효행 장려금 지원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389			○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지원 사업	협약완료	
390		서구	○	아이셋맘 행복택시사업	협약완료	
391			○	광주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협약완료	
392		대구	달서구	○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협약완료
393			달성군	○	다둥이가정 캠핑카라반 대여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394				○	다자녀가정 중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395	대구광역시 (본청)		○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	협약완료	
396			○	공영장려 서비스 제공	협약완료	
397			○	AI 안부전화서비스	협약완료	
398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협약완료	
399			○	난임 진단비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400			○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지원 사업	재협약 후 완료	
401			○	아이조아카드 지원 대상자 완화	협약완료	
402	대구광역시 교육청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협약완료	
403			○	조기진단검사비 확대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404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405			○	군위지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	협약완료 (조건부)	
406			○	군위지역 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 확대	협약완료 (조건부)	
407			○	졸업앨범비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408			○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409	복구		○	다자녀가정 차량렌트 지원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의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410	대구	서구		○	저소득가구 예비초등생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411		중구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412			○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사업	협의완료		
413	대전	대덕구	○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협의완료		
414		대전광역시 (본청)		○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	협의완료	
415				○		꿈나무사랑카드(다자녀 카드)	협의완료	
416				○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 서비스	협의완료	
417				○		독거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사업	협의완료	
418				○		경로식당 일반 이용자 급식비 지원	협의완료	
419				○		생명사랑 마음이음 사업	재협의 후 완료	
420				○		대전형 난임부부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연령차등 폐지	협의완료	
421				○		대전형 난임부부지원 - 난자동결시술비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422				○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협의완료	
423				○		대전형 난임부부지원 - 최초난임진단검사비 지원	협의완료 (조건부)	
424			대전광역시 교육청		○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협의완료
425					○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비 지원	협의완료
426					○		사회통합전형대상 학생 기숙사비 지원	협의완료
427					○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협의완료
428				서구		○	공영장려 지원대상 확대	협의완료
429		유성구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협의완료	
430			○		농민수당 지원	협의완료 (조건부)		
431	부산	강서구	○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협의완료		
432		기장군		○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433				○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협의완료	
434					○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협의완료	
43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지원	협의완료	
436				○		청년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437	부산	남구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438			○	어린이 원어민 영어 캠프	협약완료
439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사업	협약완료
440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식판 세척소독 지원사업	협약완료
441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협약완료
442		동구	○	보호종료아동 전세자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443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완료
444		동래구	○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 분뇨처리수수료 지원	협약완료
445			○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협약완료
446			○	청각장애인 및 노화성 난청인 대상 초인등 지원사업	협약완료
447		부산광역시 (본청)	○	만 6세~만 12세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사업	협약완료
448			○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	협약완료
449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협약완료
450			○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협약완료
451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452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453			○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완료
454			○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455			○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협약완료
456			○	가족사랑카드를 통한 공공시설 이용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확대	협약완료
457			○	난입지원 사업 확대	협약완료
458			○	산후조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계획	협약완료
459			○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협약완료
460			○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지원	협약완료
461			○	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462			○	구직지원 활동비 지원	협약완료
463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협약완료
464			○	가임력 보존지원 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연번	협의를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465	부산광역시 교육청	○		직업계고 내일행복드림 바우처 지원사업	협의완료	
466			○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협의완료	
467			○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저소득층 석식비 지원	협의완료	
468		북구	○		부산광역시 북구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469		사상구	○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협의완료 (조건부)
470			○		사상구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471		사하구		○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472			○		어르신 목욕비	협의완료
473		서구	○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협의완료
474		수영구	○		수영동이 안심팔찌 지원	협의완료
475				○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소망드림통장 사업	협의완료
476		영도구	○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477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478		진구	○		부산진구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479		해운대구	○		해운대청년 취업활동 촉진 사업 (구직활동비·면접수당 지원)	협의완료
480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협의완료
481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협의완료
482			○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협의완료
483				○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재협의 후 완료
484		서울	강남구	○		홈케어 서비스 지원
485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자립수당 추가)	협의완료
486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학원비)	협의완료
487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입주물품비)	협의완료
488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취업성공축하금)	협의완료
489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사례관리 및 홍보)	협의완료
490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491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정신건강 의료비)	협의완료
492	○				중증장애인 스마트 홈 지원	협의완료
493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협의완료
494	○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495	강동구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비용 구비 추가지원	협약완료
496	강북구	○		고독사 예방 밀반찬 지원사업 '기운 찬(饑)'	협약완료
497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협약완료
498		○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협약완료
499		○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500		○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사업	협약완료
501		○		이륜차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502		강서구	○		OK!홍반장 생활민원 기동대 사업
503	○			강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504	○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505	○			저소득 자립준비청년 대상 강서구 플러스 자립수당지원	협약완료
506	관악구	○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507		○		장수축하금	협약완료
508		○		강충강충 성장지원금 지원	재협약 후 완료
509	광진구		○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510		○		의료급여수급자(만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협약완료
511		○		1인가구 주택 잔고장 수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512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협약완료
513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문화체험활동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514		○		성년출발지원금 지원	재협약 후 완료
515			○	출산축하금	협약완료 (조건부)
516		○		광진형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협약완료
517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장수 축하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518			○	구로형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519		○		한방건강증진 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520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	협약완료
521		○		효행수당 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의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522	서울	○		구직 청년 응시로 지원	협의완료	
523		○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협의완료	
524		노원구	○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재협의 후 완료
525			○		스터디카페 독서실 이용권 지원	재협의 후 완료
526		도봉구	○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로 지원사업	협의완료
527			○		청년 사회첫출발지원금 지원 사업	재협의 후 완료
528			○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협의완료
529			○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재협의 후 완료
530		동대문구	○		전업 청년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협의완료
531				○	출산육아용품 구입 바우처 지원 ->아이(i) 좋은 동대문 바우처로 변경	협의완료
532		동작구	○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협의완료
533		마포구	○		마포구 장애인양육지원금 지급	재협의 후 완료
534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자 플러스 수당(가칭) 제도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535			○		타시도 학교 입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협의완료
536		서대문구	○		모든 임산부 임신축하금 지원	협의완료
537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협의완료
538			○		타 시도 학교 입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재협의 후 완료
539				○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율 변경	재협의 후 완료
540			○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541			○		저소득층 명절위문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542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협의완료
543	서울특별시 (본청)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의완료	
544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의완료	
545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협의완료	
546			○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547	서울	서울특별시 (본청)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협약완료
548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협약완료
549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협약완료
550			○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협약완료
551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협약완료
552			○	가정폭력 피해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협약완료
553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협약완료
554			○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사업	협약완료
555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협약완료
556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확대	협약완료
557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확대	협약완료
558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완료
559			○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560			○	청년문화패스(서울청년문화패스)	협약완료 (조건부)
561			○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협약완료
562			○	고효율 간편시공 보조사업	협약완료
563			○	서울시 고위험 저소득층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시범사업)	협약완료
564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교통비)	협약완료
565			○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협약완료
566			○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 급여	협약완료
567			○	가사노동자 대중교통비 비용 지원	협약완료
568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협약완료
569			○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협약완료
570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협약완료
571			○	신혼부부 주택대출 상환금 지원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572			○	입원생활비(유급병가) 지원사업	협약완료
573			○	서울키즈 오케이존	협약완료
574			○	비정형 노동자 생활체육바우처 지원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연번	협의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575	서울특별시 (본청)	○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협의완료
576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협의완료
577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포천 미래세대 첫 디딤돌 마련)	협의완료
578	서초구		○	서초구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지원 사업	협의완료
579	성동구	○		성동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협의완료
580		○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협의완료
581		○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협의완료
582			○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583		○		청년 생애 첫 세대주 지원	협의완료
58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생애 첫 세대주 지원	협의완료
585	성북구	○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586			○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587	송파구	○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협의완료
588	양천구	○		양천구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589		○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재협의 후 완료
590		○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협의완료
591	영등포구	○		산후조리비 지원	협의완료
592		○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협의완료
593		○		과학문화 이용권 지원	협의완료
594	용산구	○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595		○		이사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596	은평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협의완료
597		○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598	종로구	○		어르신 돌봄카 운영	협의완료
599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계획(자립정착금)	협의완료
600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계획(자립수당)	협의완료
601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계획(임대료지원)	협의완료

연번	협약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602	서울	중구		○	어르신 교통비 지원	협약완료	
603			○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협약완료	
604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605			○		저소득주민 이사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606		중랑구	○		미취업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협약완료	
607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금 지급	협약완료	
608		세종	세종특별 자치시 (본청)		○	난임부부 지원사업	협약완료
609	○				어민전 학습특별포인트 지원사업	협약완료	
610	○				대중교통 자기기여 인센티브 정책	재협약 후 완료	
611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612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협약완료
613	○					상수도요금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감면 지원	협약완료
614	울산	동구	○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615		북구	○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협약완료	
616			○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패키지 지원	협약완료	
617		울산광역시 (본청)	○		농민수당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618			○		어민수당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619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협약완료	
62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예외지원 확대	협약완료	
62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협약완료	
622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유치원 다자녀 가정 유아 학비 추가 지원	협약완료
623		○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624		○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간식비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625		○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협약완료	
626		울주군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지원	협약완료	
627				○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628			○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협약완료	
629	○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한 실내매트 지원 사업	재협약 후 완료	
630	○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의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631	강화군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632		○		강화군 어르신 무상교통	협의완료
633	계양구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협의완료
634	동구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협의완료
635		○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협의완료
636		○		청년 컬처페이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637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협의완료
638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월کم페이)	협의완료
639		○		저소득가정 아동 예체능 수강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640		미추홀구	○		치매조기검진 감별검사비 확대 지원
641	부평구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협의완료
642		○		장수축하금 지급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643	서구	○		청소년 생리통·불순 한방치료 시범사업	협의완료
644		○		치매검사비 지원 확대 시범사업	협의완료
645	연수구	○		장수축하금 지원	재협의 후 완료
646		○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647		○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협의완료
648	옹진군	○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협의완료
649	인천광역시 (본청)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650			○	재직청년 드림For청년통장 지원	협의완료
651			○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지원	협의완료
652		○		인천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협의완료
653			○	인천청년 면접지원(드림나래)	협의완료
654		○		난임부부 시술비 전계층 확대 지원	협의완료
655			○	디딤돌안정소득(구 인천형기초생활보장)	협의완료
656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협의완료
657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협의완료
658		○		재가 외상 어르신 기저귀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659		○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660	인천	인천광역시 (본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지원사업	협약완료	
661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협약완료	
662			○	의료취약지역 안경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663			○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협약완료	
664			○	남성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협약완료	
665			○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협약완료	
666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협약완료	
667			○	장애인등록 출장서비스 지원	협약완료	
668			○	상수도요금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감면 신설	협약완료	
669			○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670			인천광역시 교육청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협약완료
671				○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	협약완료
672			중구	○	아이 키우는 아빠 장려금	협약완료 (조건부)
673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674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협약완료		
675	전남	강진군	○	복지사각지대 목욕쿠폰 지원	협약완료	
676			○	학생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677		고흥군	○	장애아동 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678			○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확대지원 사업	협약완료	
679		곡성군	○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협약완료	
680			○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협약완료	
681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지원	협약완료	
682			○	곡성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협약완료	
683			○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684			○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협약완료	
685	광양시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686		○	임산부 분만비 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687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688		○	65세 이상 시내버스 복지카드	협약완료		
689		○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 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의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690	전남	구례군	○	입학 준비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691			○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협의완료	
692			나주시	○	나주형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협의완료
693		○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	협의완료	
694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협의완료	
695		○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조건부)	
696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저귀 지원사업	협의완료	
697		○		365일 시간제 보육 사업	협의완료	
698		○		저소득 전입예정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699		○		취업 청년 공동주택 무상임대 지원사업	협의완료	
700		○		나주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협의완료	
701		담양군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협의완료
702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지원	협의완료	
703			○	어르신 안전보행 LED 스마트 지팡이 지원사업	협의완료	
704			○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조건부)	
705		목포시		○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확대	협의완료
706			○	다문화가정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707			○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재협의 후 완료	
708			○	어르신 무릎·백내장 수술비 지원	협의완료	
709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의완료	
710	무안군			○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711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712		○	무안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의완료		
713	무주군	○	급성기 질환 어르신 한시적 요양지원	협의완료		
714		○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715	순천시	○	산후조리비용 지원	협의완료		
716		○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사업	협의완료		
717		○	장애인 위생 물품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718		○	순천시 치매검진비(진단·감별) 지원 사업 확대	협의완료		
719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조건부)	
720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약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721	전남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완료		
722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 사업	협약완료		
723		여수시		○	임신헌진비 확대 지원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724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협약완료	
725			○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사업	협약완료	
726				○	여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협약완료	
727			영광군		○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	협약완료
728				○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재협약 후 완료
729		○			암 검진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730		○			초중고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	재협약 후 완료	
731		영암군		○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	협약완료
732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확대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733			○		청년문화수당 지원	재협약 후 완료	
734			○		청소년 문화활동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735		완도군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협약완료	
736				○	완도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737			○		빙그레 웃는 맘, 행복출산 시범사업 운영 (운동비, 운동기구 구입비 지원)	협약완료	
738			○		65세 이상 여객선 무료운임 지원사업	협약완료	
739		장성군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사업	협약완료	
740				○	효도권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741		장흥군	○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	협약완료	
742			○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	협약완료	
743		전라남도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744			○		전라남도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협약완료	
745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협약완료	
746		진도군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협약완료	
747				○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확대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748			○		난임 시술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협약완료	

연번	협의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749	전남	해남군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750			○		출산맘(MOM) 건강회복 프로젝트	협의완료	
751			○		장애인가족사랑여행지원사업	협의완료	
752			○		국가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	협의완료	
753		화순군	○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	협의완료	
754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755			○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	협의완료	
756			○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사업	협의완료	
757			○		초·중·고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758			○		난임진단비 지원	협의완료 (조건부)	
759			○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협의완료	
760		○			행복 나눔 이불빨래방 지원사업	협의완료	
761		전북	고창군	○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지원	협의완료
762				○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763	○				65세 이상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협의완료	
764	군산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재협의 후 완료	
765			○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766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767			○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협의완료	
768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협의완료
769	김제시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770			○		어르신 건강진단장려금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771			○		백세 장수어르신 축하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772	남원시		○		행복미소 치아 지원 사업	협의완료	
773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774			○		어린이집 만0~2세 필요경비(부모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775		○		청중장년 취약가구 인공지능형(AI) 안심케어 사업	협의완료		
776		○		출생아 띠도장 지원사업	협의완료		
777		○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지원	협의완료		
778	○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	재협의 후 완료		



연번	협의를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779	전북	부안군	○	부안군 공영장려 지원 사업	협약완료	
780			○	노인 등 목욕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781			○	신장 장애인 지원 사업	협약완료	
782			○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협약완료	
783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중증장애인 근로장려수당	협약완료	
784		순창군	○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785			○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786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활동비 증액	협약완료
787		완주군	○	완주군 장애인 가정 출산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788			○	자립준비청년수당 지급	협약완료	
789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협약완료	
790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791			○	완주군 청년지원금제	재협약 후 완료	
792				○	신혼부부 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완료
793				○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	협약완료
794		익산시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협약완료
795			○	익산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협약완료	
796			○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	협약완료	
797			○	초등학교 돌봄 건강도시락 공급사업	협약완료	
798			○	청년월세 지원사업	협약완료	
799			임실군	○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임부담금 지원	협약완료
800		○		행복아동수당 지원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801		장수군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	협약완료	
802			○	장수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협약완료	
803			○	어린이집 필요경비(0~2세) 지원 사업	협약완료	
804			○	일하는 청년 수당	재협약 후 완료	

연번	협의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805	전북	전라북도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협의를 완료	
806			○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	협의를 완료	
807			○	한의치매예방사업	협의를 완료	
808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협의를 완료	
809			○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협의를 완료 (조건부)	
81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811		전라북도 교육청	○	입학준비금 지원	협의를 완료	
812			○	에듀페이(학습지원비) 지원	협의를 완료	
813			○	에듀페이(진로지원비) 지원	협의를 완료	
814		전주시		○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	협의를 완료
81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협의를 완료	
816			○	전입 축하용품 지급	재협의 후 완료	
817			○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사업	협의를 완료 (조건부)	
818			○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협의를 완료	
819			○	치매감별검사비 확대 지원사업	협의를 완료	
820				○	육아수당 지원	재협의 후 완료
821		정읍시		○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협의를 완료
822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협의를 완료
823			○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협의를 완료
824			○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사업	협의를 완료
825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협의를 완료	
826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추가 지원	협의를 완료 (조건부)	
827	○			청년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협의를 완료 (조건부)	
828	○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교통비 지원	협의를 완료	
829	○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협의를 완료	
830			○	65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사업	협의를 완료	
831	진안군	○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입주가구 전기요금 지원	협의를 완료	
832		○		고등학생 글로벌 문화체험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833	제주		○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	협약완료				
834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835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협약완료				
836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협약완료				
837				저소득 예비노년층 안경 지원	협약완료				
838				저소득 노인 안경 지원사업	협약완료				
839				어린이집 부모부담경비 지원	협약완료				
840				마음나눔교실(치유선도프로그램) 운영	협약완료				
841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협약완료				
842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양육지원 사업	협약완료			
843				○	아동문화체육활동비 지원	재협약 후 완료			
844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845				○	어린이 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 간식 등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846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847				○	입양아동 대학준비금 지원	협약완료			
848				○	중고특수학교 학생 체육복비 지원	협약완료			
849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850				○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협약완료			
851				○	청년이어드림지원금	협약완료			
852				○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사업	협약완료			
853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협약완료			
854				○	스마트노인돌봄서비스	협약완료			
855				○	무주택 청년 이사비용 지원 사업	협약완료			
856				○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협약완료			
857				○	여성 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협약완료			
858				계룡시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협약완료	
859				충남		○	노인건강목욕티켓 지원사업	협약완료	
860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협약완료
861							○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협약완료
862							○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	재협약 후 완료
863	○	어르신 복지 이용권	협약완료						

연번	협의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864	충남	○		금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	협의완료	
865		논산시	○		청년주택자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866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재협의 후 완료
867			○		논산시 출산장려금 증액 미추진 및 육아지원금 신설	재협의 후 완료
868			당진시	○		산후조리비 지원
869		보령시	○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협의완료
870			○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지원	협의완료
871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협의완료
872			○		섬주민 천원 여객선 운영	협의완료 (조건부)
873			○		청년 역량강화 자격증 응시료 지원	협의완료
874			부여군	○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확대 사업
875		○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 추가 장제급여 지원	협의완료
876		○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재협의 후 완료
877				○	부여군 입학 준비금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878		서산시	○		산모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	협의완료
879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협의완료
880			○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협의완료
88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지원사업	협의완료
882		서천군	○		경로당 임원 활동수당 지급	재협의 후 완료
883		아산시	○		아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협의완료
884			○		청년을 위한 중개보수 반값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제한 전화 완료)	협의완료
885		예산군	○		취약계층 퇴원환자 단기 돌봄	협의완료
886			○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협의완료
887				○	청년 전·월세 보증금	협의완료
888				○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협의완료
889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협의완료
890				○	전입실비	협의완료
891			○	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892	충남		○	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협약완료		
893			○	국적 취득자 지원금	협약완료		
894		예산군		○	고령노인·치매환자 낙상위험환경 개선사업	협약완료	
895				○	큰아이 돌봄 비용 지원	협약완료	
896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897				○	만 70세 이상 무료 교통카드 지원사업	협약완료	
898				○	출산 여성 운동비	협약완료	
899			천안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협약완료
900					○	장애인세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협약완료
901					○	한부모가족 수도요금 감면 사업	협약완료
902				○	천안시 다등이가정 양육바우처 지원	재협약 후 완료	
903				○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 지원	협약완료	
904		청양군			○	취약계층(만 60세-64세)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 지원	협약완료
905				○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	협약완료	
906		충청남도 (본청)		○	충남 취업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협약완료	
907				○	자녀교육비 지원	협약완료	
908				○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909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910				○	충남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협약완료	
911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협약완료	
912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	협약완료	
913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협약완료	
914			태안군		○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915					○	우리마을 참 어르신 지원사업	협약완료
916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협약완료	
917		홍성군		○	학생전입축하금	협약완료	
918				○	주거지원금	협약완료	
919				○	체육시설 사용(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확대	협약완료	
920				○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확대	협약완료	
921			○	다자녀가구 쓰레기봉투 무상지원대상 확대	협약완료		
922			○	임산부 및 다자녀 전용 주차장 지원대상 확대	협약완료		
923			○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확대	협약완료		

연번	협의를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924	단양시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925	보은군	○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926		○		중·고생 학습 증진 사업	협의완료 (조건부)	
927	영동군	○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협의완료	
928		○		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협의완료	
929			○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확대	협의완료	
930		○		영동군 바우처 택시	협의완료	
931	옥천군	○		저소득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932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협의완료	
933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옥천군 지원확대)	협의완료 (조건부)	
934		○		새 출발 건강 프로젝트 사업	협의완료 (조건부)	
935		○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신설)	협의완료	
936			○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937		음성군	○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938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939			○	유·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940	제천시		○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협의완료	
941			○	제천시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협의완료	
942	증평군	○		다자녀 가정 간식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943		○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100% 지원사업	협의완료	
944	진천군	○		생거 진천 뿌리내리기 지원 사업	협의완료	
945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협의완료 (조건부)	
946	청주시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947			○	예비임산부 산전검사(풍진) 지원	협의완료	
948			○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사업	협의완료	
949	충주시	○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구입비 지원	협의완료	
950			○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약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951	충북	충청북도 (본청)		○	충북 의료비후불제사업(시범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952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953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95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협약완료
955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협약완료
956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협약완료
957				○	충북 의료비후불제사업(시범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958			○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959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960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협약완료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협의대상목록(2023.12.31. 기준)**

연번	부처명	소관부서	사업명
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2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3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5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
6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국민취업지원제도
7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8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10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1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13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14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직업훈련
15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16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17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진폐근로자보호
18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9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2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2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2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생계비대부
2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2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보조공학기기지원
25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26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27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용자·지원
28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연번	부처명	소관부서	사업명
29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인턴제
3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3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3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3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3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생활안정자금(용자)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디지털배움터)
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이동통신요금감면
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43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44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45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46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47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4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49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탈북학생 교육지원
50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51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52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초등돌봄교실
53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54	교육부	이러닝과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55	교육부	정보지원과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56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국가장학금(I, II유형)
57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58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인문100년장학금
59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60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61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62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연번	부처명	소관부서	사업명
63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64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평생교육바우처
65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WEE 클래스 상담지원
66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급식비
67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영주귀국정착금
68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간호수당
70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고엽제환자2세수당
71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
72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73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74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무공영예수당
75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상금
76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77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사망일시금
78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재해보상금
7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참전명예수당
80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고엽제특별지원
81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82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83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보훈병원 진료
84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위탁병원진료
85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86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87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양로지원
88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89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내항여객선, KTX 등)
90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91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재해위로금지급
92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93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94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95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연번	부처명	소관부서	사업명
96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97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98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99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손자녀가계지원비
100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애국지사특별예우금
101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102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103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 대부지원
104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전직지원금
105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106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공공주택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107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국민임대주택공급
108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영구임대주택공급
109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통합공공임대
11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행복주택 공급
1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11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
113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114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115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116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117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1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19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120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2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버팀목대출보증
12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2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24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125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햇살론youth 보증사업)
126	금융위원회	은행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127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근로·자녀장려금
12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12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

연번	부처명	소관부서	사업명
13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13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 지원
13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133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양곡할인
134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35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농업인안전보험
13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학교유유급식
137	대검찰청	형사4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38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큰글자책 보급 지원
13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140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14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창작준비금 지원
142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장애인스포츠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4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144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스포츠포츠강좌이용권
145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14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 시범사업
147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148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49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150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15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5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5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15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교육지원
155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5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157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15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의료지원
15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16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주거지원
16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16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16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장제급여

연번	부처명	소관부서	사업명
16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해산급여
16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166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167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168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169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틀니·치과임플란트
17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17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172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요양비)
173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
174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175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176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177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178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79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18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8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182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183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184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85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186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방과후보육료지원
187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18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다문화보육료지원
189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19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부모급여 지원
19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시간제보육
19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19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장애아보육료지원
195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19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197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연번	부처명	소관부서	사업명
19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9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0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의사상자지원
203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204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205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06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207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208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209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10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1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지급
21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비용지원
21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21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1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21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217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21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219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22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시설급여
22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가급여
222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22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224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노후준비서비스
225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다함께 돌봄 사업
22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227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노숙인등 복지지원
228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I, II)
229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연번	부처명	소관부서	사업명
230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23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청년내일저축계좌
232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233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234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23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236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237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238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3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재활서비스
240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언어발달지원사업
24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여성장애인교육지원
242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24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44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
24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246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수당
247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아동수당
248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249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250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의료비지원
25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일자리지원
252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
25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25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255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
256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257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보조조건전문훈련기관지원
258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연번	부처명	소관부서	사업명
259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26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26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26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263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
26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265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6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암검진사업
267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암환자의료비지원
268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원폭피해자지원
26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재가암환자관리
270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센인 피해자지원
27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272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73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74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75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76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첫만남이용권
277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78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279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280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28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282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치매검사비 지원
283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284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285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286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287	산림청	산림자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연번	부처명	소관부서	사업명
288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지원단
289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290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에너지바우처
291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292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구 보금자리주택신재생보급)
293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회복지시설)
294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아이돌봄 서비스
295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296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97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298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299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300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30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302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03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304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305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306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307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08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309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310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31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312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31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314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315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316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17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연번	부처명	소관부서	사업명
318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해소사업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319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320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32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322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323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324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325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326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국제교류
327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328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지원
329	여성가족부	출산정책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330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내일이룸학교 운영
33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332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특별지원
333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34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재외국민긴급지원비
33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용자)
33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33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 창업육성
33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33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창업육성
340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여성기업 판로지원
341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342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여성창업경진대회
34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344	질병관리청	결핵조사과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345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346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347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348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49	통일부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350	통일부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연번	부처명	소관부서	사업명
351	통일부	이산가족과	납북피해자 지원
352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353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354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355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356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357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358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359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360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36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어촌생활돌봄지원
362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사업
363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도서관 여객선 운임지원
364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365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36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367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석면피해구제급여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연번	시도명	부서명
1	강원도	복지정책과
2	경기도	복지정책과
3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4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5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
6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7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8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9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10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11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12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13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14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1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16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17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시도별 배열 순서는 가나다 順

**【부록 4】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 협의요청서 작성 방법의 이해를 돕고자, 지자체 사업 중 일부내용을 수정·편집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작성 이해 목적 외 사용금지(예, 동일내용의 사업을 그대로 작성하여 사업 요청 등)

**[신설] 노인 교통 이동 지원**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__ 0 회)	
근거	<input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예:건강보험 092)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실비 지급 금액 수립 예정)
급여	기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격 <input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버스요금 면제)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type="checkbox"/> 월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횟수	버스요금 월8회분 * 12개월
전달 체계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운송업체 손실보상)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복지 자원	주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 <span style="float: right;">비율 100 %</span>
	부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 <span style="float: right;">비율 ___ %</span>
지원규모	총 2100명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지급)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지역사회보장계획포함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포함 (추진전략번호: 3 사업번호:○○-○, 중점추진사업: ○-○ )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 협의를요청일		시행예정 : '25. 1월 중, / 협의요청일 '24. 1월
제도 신설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빨리 높아가는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최고수준(2020년OECD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0년간 (2011~2020년)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 평균(2.6%)의 약2배 가까이로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li> <li>* <b>코로나19 위기 이후</b> 소득보전, 고용유지 정책, 고령층 및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 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b>고령층</b> 등을 중심으로 <b>분배 악화</b></li> <li>*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 생산성 및 <b>일생활 균형·환경 부문 삶의 질 제고 필요</b></li> <li>* 취약한 사회안전망 및 미성숙한 연금제도로 비정규직과 <b>노인빈곤율</b>이OECD에서 가장 높음</li> </ul> </li> <li>○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질병, 생계 등 경제적 요인으로 자유로운 이동 제한 및 교통비 부담 가중 일상생활 균형 및 삶의 질 향상 절실</li> <li>○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교통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통서비스 정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65세 이상 노인 대상 시내버스 요금·지원을 통하여 고령층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권 확대로 노인의 사회활동 지수를 높여, 삶의 질 향상 및 포용성 강화를 도모하고 자함</b></li> </ul> </li> </ul>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범위)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교부) 교통약자 교통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li> <li>○ 00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li> </ul>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해 시내·농어촌 버스·교통 제공을 통하여 최소한의 공공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질적·포용적 교통 복지 실현</li> <li>○ <b>대중교통 활성화</b> 및 교통약자에게 <b>친환경 .교통</b>을 제공하여 <b>이상기후, 지구 온난화에 적극 대응하여</b> 탄소 배출 감소, 저탄소 경제구조를 조성하여 환경과 취약계층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린뉴딜 실천</li> </ul>
성과지표		○ <b>대중교통 이용률(65세 이상 이용자 / 전체 이용자)</b>
지원 대상	선정기준	○○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대상규모	'25년 실 대상자(추계인원) <b>2,100명, 연평균 1,156명 증가</b> ※ 실이용자 산식 : $【25,390명(만 65세 이상) \times 8.3\%(65세 이상 버스이용율)】$ ※ 산출기초 : 2,100명 = $【(25,390) \times 8.3\%】$ ※ <b>26,546명</b> (2023. 12. 예상 노인인구)
지원	지원유형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 시내(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구 분		주요 내용						
내용	지원수준	연간 160천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 및 확인[읍·면·동사무소→ 선정 및 사후 관리(〇〇시)]						
	수행기관	〇〇시청, 관내 1개 시내버스 운송업체(00운송그룹)						
소요 재원	총규모	총 876백만원(시비) (단위: 백만원)						
		계	전산개발비	전산운영 및 유지보수비	일반 운영비	교통비 손실보전금	적용대상인원 (명)	이용율
		876	440	90	10	336	2,100	8.3%적용
		1,353	440	90	10	813	5,080	20%
	1,760	440	90	10	1,220	7,620	30%	
	재원별 규모	시비 100%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정보	인적정보, 전출입 정보 등						
	연계방안	교통카드 통합시스템 구축						

### 3. 사업의 타당성

####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 □ 고령층 삶의 질 향상과 포용성 강화 필요

-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보전, 고용유지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분배 악화.
-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율, 생산성 및 일생활균형·환경 부문 삶의 질 제고 필요
- 특히,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소득감소 등 발생, 낮은 연금 수급액 등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면서, 경제적 경감,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OECD 한국보고서) 노인 상대 빈곤율 최고, 소득불평등도 OECD 7위 높음
- (경기연구원) 코로나19 이후 소비여력이 있는 소득층은 승용차 선호(주말 13만대↑) 하나 어린이, 65세 이상 고령층 등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 복지교통 포용성 강화 절실함.

□ 교통약자 이동권·안전 보장 및 여가·문화·사회활동 확대

- ○○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 지역사회 정책의 우선순위로 노인 복지 확대 지원(2위)에 대한 주민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며
  - ○○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대다수(56.8%)가 노인복지 확대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 제공을 통한 노인의 이동권 (병원진료, 전통시장 5일장 방문 등) 보장 및 여가 문화 사회활동 장려 절실하게 필요
- \* (2019 ○○시 사회조사 보고서) 복지분야 우선 지원 출산·보육(1위), 노인복지(2위)

그림 ▶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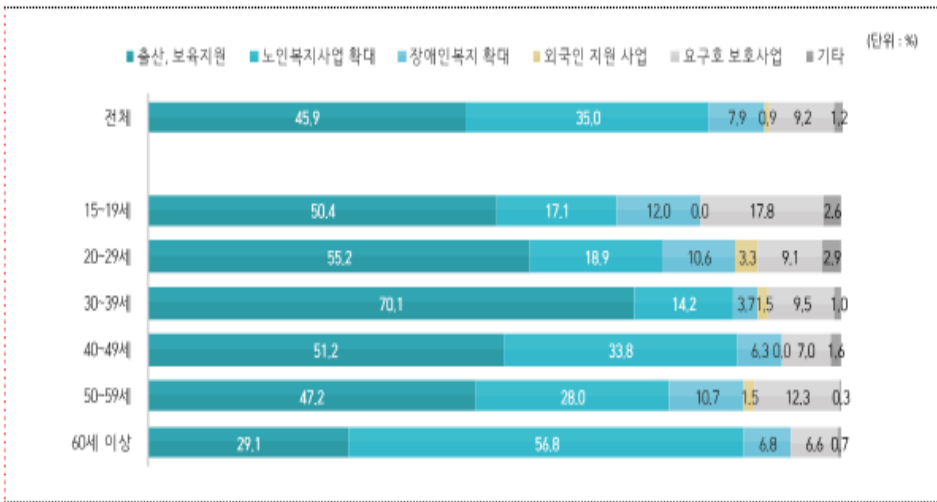


표 ▶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구분	사회복지 우선 분야						
	출산·보육지원	노인복지사업 확대	장애인복지 확대	외국인 지원사업	요구호 보호사업	기타	
경기도	42.6	32.3	7.8	1.1	14.9	1.3	
2019	45.9	35.0	7.9	0.9	9.2	1.2	
2017	41.1	34.5	5.5	0.7	17.0	1.2	
성별	남	44.5	34.0	9.4	0.5	10.1	1.6
	여	47.3	36.0	6.4	1.3	8.3	0.8
연령	15 - 19세	50.4	17.1	12.0	0.0	17.8	2.6
	20 - 29세	55.2	18.9	10.6	3.3	9.1	2.9
	30 - 39세	70.1	14.2	3.7	1.5	9.5	1.0
	40 - 49세	51.2	33.8	6.3	0.0	7.0	1.6
	50 - 59세	47.2	28.0	10.7	1.5	12.3	0.3
	60세 이상	29.1	56.8	6.8	0.0	6.6	0.7



## □ 〇〇시 교통환경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교통정책 필요

- 〇〇시는 수도권 전철(경강선)부터 가남읍 지역 일반 열차(무궁화, 새마을)의 정차로 서울 및 수도권 대한 이동, 접근 용이하나 관내 버스 노선관련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배차간격 길다”(57.2%)(2019 〇〇시군 사회조사 보고서)라는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넓은 면적에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의 수가(농어촌 버스 51대 운행중) 적어 보통 〇〇시내지역(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운행 횟수가 1일 4~5회 정도로 운행 횟수가 적은 편임
- 적은 운행 횟수로 주민의 승용차 이용 증가하면, 버스 승객 감소로 관내 운수업체 적자가 지속되어(운행할수록 적자의 폭 증가) 운행 횟수를 더 줄이게 되어 〇〇시내 지역 제외한 낙후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가중으로 악순환이 반복됨
-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등 사회적 위기 및 급격한 버스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낙후지역 배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교통환경 구축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교통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②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적극 동참

- (국정과제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강화  
**※ 교통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
- (국정과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 (국정과제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재정립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

## ③ 지역의 특수성

### □ 지리적 여건

- 〇〇시는 〇〇도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〇〇도 면적의 5.98%인 608.4km<sup>2</sup>면적으로, 〇〇시 등과 인접하고 있음.

〇〇시 인구 및 세대수 현황 (2023. 12. 31.)

(단위 : 개,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인구(명)	114,659	115,358				0.16%
세대수(세대)	50,334	51,748				1.96%
세대당 인구(명/세대)	2.28	2.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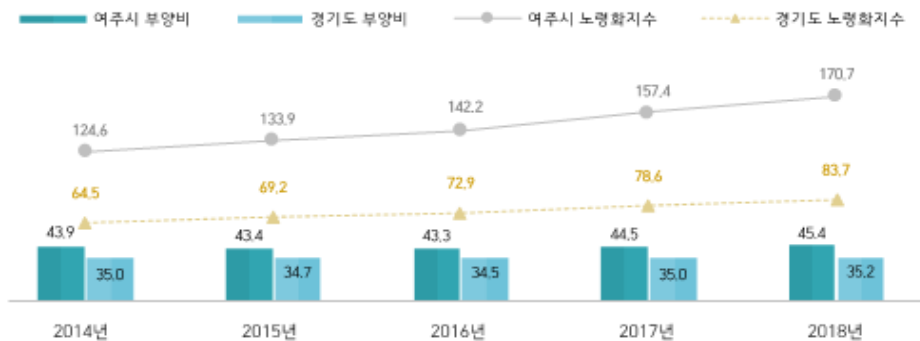
※ 출처 : 〇〇시 제60회 통계연보 및 주민등록인구현황, 〇〇시 내부자료, 2020.

□ 인구현황 및 여건변화 추이

- 〇〇시 인구는 112,289명이 거주(외국인 제외)하고 있으며, 이중 노인인구는 25,390명으로(2023. 12말 기준)
  - 고령화율이 00도 평균 13.2%보다 높은 **22.6%**로 초고령 사회임
  - 2023 〇〇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〇〇시 노령화 지수의 경우 00도 평균 83.7명보다 많이 높은 170.7명임

〈 〇〇시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현황 〉

(단위 : 명, 인구 1백명당 명)



- 노인인구도 '18년은 21,666명(19.4%), '19년은 22,681명(20.4%), '20년은 24,031명(21.6%) '21년은 25,390명(22.6%)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임.

〈 〇〇시 65세 이상 인구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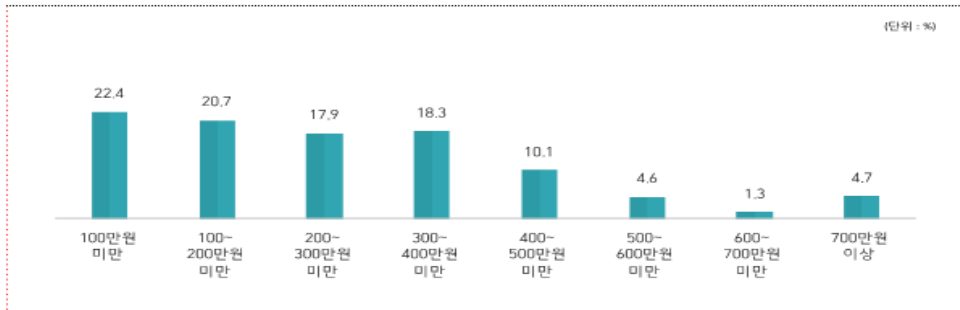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전체인구	65세 이상	증감	평균	비고
2021. 12월	112,289	25,390(22.6%)	증1,359	1,156명 (순증)	
2020. 12월	111,438	24,031(21.6%)	증1,350		
2019. 12월	111,095	22,681(20.4%)	증1,015		
2018. 12월	111,639	21,666(19.4%)	증902		'17.12월. 노인 : 20,764

□ 취약계층 현황 및 인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 ○○시 전체 인구 112,289명 중 기초수급 5,178명, 장애인 7,383명, 차상위 2,457명, 한부모 1,312명, 기초연금수급자 17,411명 총 33,74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0.0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전체 인구 소득 실태를 보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 전체 조사 인구의 61%를 차지하여 소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 가구주를 대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알아본 결과, ‘100만원 미만’이 22.4%로 가장 높고, ‘100만원 ~ 200만원 미만’ 20.7%, ‘200만원 ~ 300만원 미만’ 17.9%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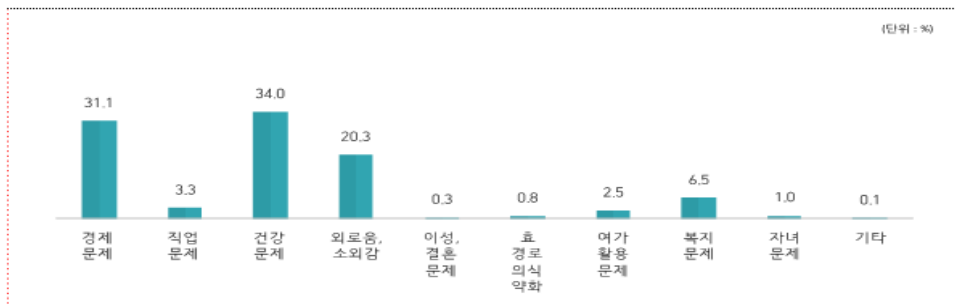
그림 ▶ 월평균 가구 소득(가구주)



출처: 2023. ○○시 사회조사 보고서

-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 34.0%가 건강문제, 31.1%가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파악
  - 노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로는 ‘건강 문제’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경제 문제’ 31.1%, ‘외로움, 소외감’ 20.3% 순으로 나타남

그림 ▶ 노인이 느끼는 문제



출처: 2023. ○○시 사회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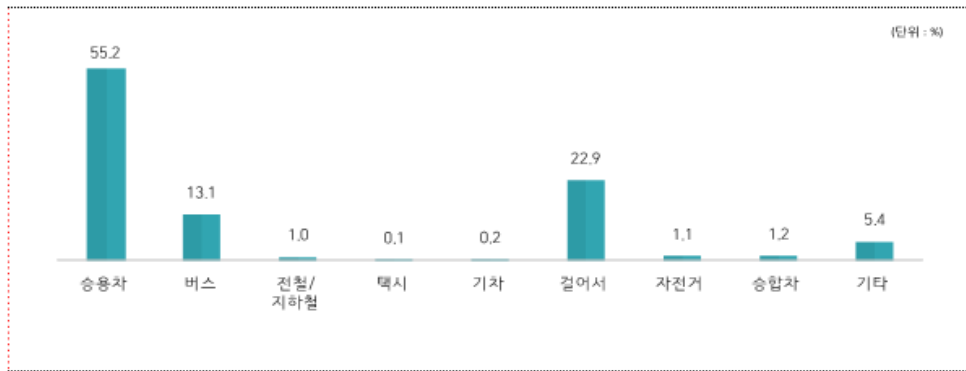
□ 대중교통 이용 현황

○ 2023 ○○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승용차 55.2%, 버스 13.1%로 통근·통학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통근·통학 시 이용 교통수단 1순위 '승용차'(55.2%), 2순위 '걸어서'(22.9%)

- 통근·통학을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통근·통학 시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55.2%, '걸어서'가 22.9%, '버스가'이 13.1%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 통근·통학 교통수단



출처: 2023. ○○시 사회조사 보고서

표 ▶ 통근·통학 교통수단 (단위 : %)

구 분	통근·통학함	통근·통학시 교통수단									
		승용차	버스	전철 지하철	택시	기차	걸어서	자전거	승합차	기타	
00도	65.4	44.9	25.0	12.3	0.2	0.1	13.4	1.1	1.6	1.2	
2019	65.6	<b>55.2</b>	<b>13.1</b>	<b>1.0</b>	<b>0.1</b>	<b>0.2</b>	<b>22.9</b>	<b>1.1</b>	<b>1.2</b>	<b>5.4</b>	
2017	62.8	53.8	15.2	0.9	0.3	0.0	21.5	2.5	4.5	1.2	
성 별	남 자	77.1	57.6	7.8	0.7	0.2	0.2	24.5	1.5	1.1	6.7
	여 자	53.8	51.6	20.9	1.4	0.0	0.2	20.6	0.5	1.3	3.5
연 령	15 - 19 세	86.9	14.4	53.5	0.0	0.0	0.0	30.7	1.4	0.0	0.0
	20 - 29 세	64.7	48.6	31.8	4.8	0.0	0.0	11.6	2.1	0.0	1.0
	30 - 39 세	76.9	79.1	4.6	1.7	0.0	0.0	11.6	0.0	1.4	1.7
	40 - 49 세	79.2	74.7	6.7	0.5	0.0	0.5	15.6	0.0	0.5	1.6
	50 - 59 세	81.0	64.3	5.2	0.0	0.0	0.4	21.0	0.0	1.7	7.3
60 세 이상	41.2	<b>28.4</b>	<b>8.3</b>	<b>0.3</b>	<b>0.5</b>	<b>0.0</b>	<b>43.2</b>	<b>3.4</b>	<b>2.1</b>	<b>13.8</b>	
가 구 수	1 인 가 구	52.8	56.0	9.5	0.8	0.8	0.0	27.9	0.0	0.0	5.1
	2 인 가 구	64.1	52.7	7.2	0.7	0.0	0.3	27.0	1.4	2.0	8.8
	3 인 가 구	66.7	55.4	14.3	2.2	0.0	0.4	22.6	0.8	0.0	4.2
	4 인 가 구	77.9	59.4	23.0	0.5	0.0	0.0	10.9	1.8	2.1	2.3
	5 인가구이상	71.1	53.9	18.9	0.0	0.0	0.0	27.3	0.0	0.0	0.0

출처: 2023. ○○시 사회조사 보고서

- 통근·통학시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13.1%를 차지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노인 이용 비율은 8.3%로 적으나 60세 이상의 노인의 주된 경제활동 분야는 농업으로 주거지 근처에서 농업에 종사하므로 통근·통학을 위한 버스 이용률 저조함 65세 이상 노인은 병원 진료, 여가, 전통시장 방문, 읍·면사무소 방문 등 개인적인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버스를 주로 이용

주로 종사하는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19.7%), '제조업'(15.6%), '도매 및 소매업'(9.8%)

-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종사하는 산업을 확인한 결과, '농업, 임업 및 어업'이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제조업' 15.6%, '도매 및 소매업' 9.8% 순으로 나타남
- 산업 분석결과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성별로는 남자(20.7%),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6.6%), 교육 정도별로는 초졸 이하(56.1%)에서 높고, '제조업'은 성별로는 남자(20.1%), 연령별로는 40-49세(19.9%), 30-39세(19.7%), 50-59세(18.8%), 교육 정도별로는 고졸(20.5%)에서 높았음

그림 ▶ 평소 경제활동(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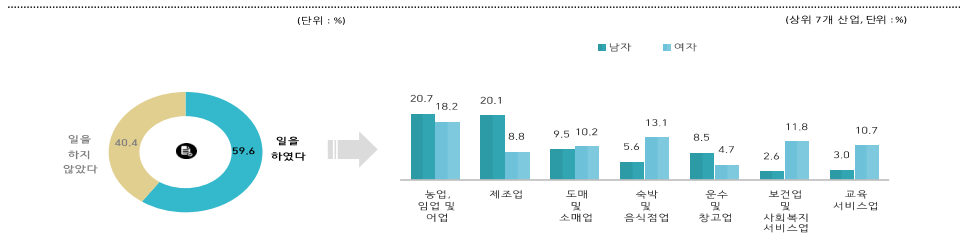


표 ▶ 평소 경제활동(산업)

(단위 : %)

구 분	종사산업(상위 10 개)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 창고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지방행정	사회복지행정
00도	2.3	19.1	13.7	7.5	5.7	7.4	6.9	7.8	2.1	3.2	
2019	19.7	15.6	9.8	8.6	7.0	6.3	6.1	5.6	5.0	4.2	
성 별	남 자	20.7	20.1	9.5	5.6	8.5	2.6	3.0	8.6	3.7	4.6
	여 자	18.2	8.8	10.2	13.1	4.7	11.8	10.7	1.1	6.9	3.7
연 령	15 - 19 세	0.0	0.0	67.8	32.2	0.0	0.0	0.0	0.0	0.0	0.0
	20 - 29 세	0.0	10.5	16.1	17.1	3.5	6.4	10.8	6.5	7.0	6.5
	30 - 39 세	7.7	19.7	14.4	9.9	5.4	7.1	10.1	6.8	5.1	5.4
	40 - 49 세	8.4	19.9	10.0	7.3	12.7	4.3	5.8	5.7	6.9	5.2
	50 - 59 세	12.7	18.8	8.3	9.8	9.3	9.3	5.2	5.7	4.6	3.0
	60 세 이상	56.6	7.3	4.3	3.0	1.6	4.1	2.5	4.2	2.6	3.0
교 육	초 졸 이 하	56.1	4.4	5.2	3.0	2.1	6.2	2.0	2.5	5.5	4.6
	중 졸	46.4	10.2	5.8	5.8	4.1	4.3	3.0	5.7	4.3	1.2
	고 졸	12.2	20.5	11.8	12.4	9.8	4.5	3.4	6.0	4.7	1.7
	대 학 고 졸	6.5	15.1	10.9	6.5	5.9	9.9	11.4	6.5	5.9	9.4
	대 학 원 졸	2.7	14.6	0.0	4.5	8.4	4.2	25.4	4.5	0.0	0.0

출처: 2023. ○○시 사회조사 보고서

- 2020년 기준 시내버스 이용자는 연간 1,222,797명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시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1만6백 여명이며, 전체 경제활동인구 6만2천 5백여명 중 17%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시 시내버스 업체별 연간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경기고속	대원고속	비고
2021	2,935,765	1,162,981	1,772,784	
2022	2,876,139	1,101,866	1,774,237	
2023	2,028,560	805,763	1,222,797	

※ 출처 : 해당업체 자료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수)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전체	성 별		연 령 별			
		남자	여자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시	62.5	38.1	24.5	8.3	21.1	22.5	10.6

※ 출처 : 통계청(2021. 8.)

- ▶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 거주 교통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득 수준이 매우 낮고 교통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상대적인 박탈감(소득양극화)이 존재하고 있음.
- ▶ 또한, ○○시 전체 노인인구 25,390명 중 2,107명 8.3 % 정도가 “시내버스”를 주요교통수단으로 병원진료, 여가, 시내 및 전통시장 방문 등 경제활동 및 개인활동을 할 것으로 파악되며, 아울러 양평군 경우 전철을 이용하는 노인의 목적통행은 미미하며 주로 전통시장, 병원 등을 주로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추세
- ▶ 따라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과 동시에 코로나 재확산우려 등으로 고령층 소득 분배악화로 삶의 질 저하, 소득수준이 낮은 교통약자 이동권 및 생활권을 확대하여 노인의 사회 활동 지수를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교통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더불어 승용차 대신 친환경 버스 이용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하여 기후 위기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 편익 및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 국내 유사제도(사례)

구 분	내 용
00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업 명 : 00군 버스 공영제(와와버스)</li> <li>· 추진배경 : 버스 공공성, 지역경제 활성화(소비 촉진)</li> <li>· 사업시작 : 2020. 6. ~ 현재</li> <li>·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9,734명(전체 인구 6만 7천명의 27.3%)</li> <li>· 카드발급 : 5,962명(60.8%)</li> <li>· 실재사용 : 5,389명(55.37%)</li> <li>· 이용횟수 : 8회(편도/ 1인당 월 평균)</li> <li>· 사 업 비 : 38억(전체 예산 4,967천억원 중 0.76% 차지)</li> <li>· 참고사항 : 조례 제정, 전담TF구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li> </ul>
00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업 명 : 00형교통카드(75세 이상)+00시 .교통(65세 이상)</li> <li>· 추진배경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역경제, 포용적 복지 실현</li> <li>· 사업시작 : 00형교통카드(2019.7. ~) 00시 .교통(2017.8.~)</li> <li>·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8만 7천여명(전체인구 69만 12.6%)</li> <li>· 발급인원 : 52,381명(72.42%)</li> <li>· 이용횟수 : 10.3회(편도/ 1인당 월)</li> <li>· 연간이용 : 3,156,620건</li> <li>· 사 업 비 : 60억(전체 예산 1조 9천억원 중 0.31% 차지)</li> <li>· 참고사항 : 조례 제정, 전담인력 배치, 도-시군 협약</li> </ul>
00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업 명 : 00군 버스 공영제(1004버스)</li> <li>· 추진배경 : 버스 공공성 확보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li> <li>· 사업시작 : 2013. 5. ~ 현재(전국 최초 버스공영제)</li> <li>·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14,000명(4만여명 34%)</li> <li>· 발급인원 : 65세 이상 62,310명(이용자 93% 노인)</li> <li>· 연간이용 : 670,000명</li> <li>· 이용횟수 : 6.3회(편도/ 1인당 월)</li> <li>· 사 업 비 : 44억(전체 8천800백억 중 0.5% 차지)</li> <li>· 참고사항 : 이용자 증가, 읍면소재지 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전담팀, 표준운송단가 낮음(공영제) 예산 15% 절감</li> </ul>

※ 00시 전체 예산 8,655억원 중 0.1% 차지( 타 시군 비해 비율이 적음)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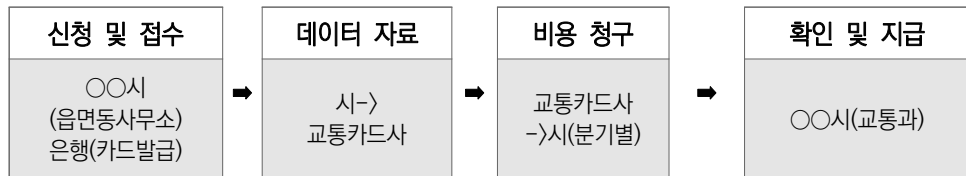
- 대상자인 “노인”에게 한도금액 내에서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는 사용한 금액만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용도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타 현금성수당과는 차이가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근거로 운송업체 손실보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교통 취약계층인 노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우리군의 독자적인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임
- 지원 대상자인 노인의 교통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위드 코로나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의료·문화·여가·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기회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복지정책 확대가 아닌, 환경 편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편의 증대 기여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

① 대상자 선정기준

□ 대 상 자 : 65세 이상 노인

□ 지원방법 : ( 시내버스 ) ( 이용자 ) 이용에 따른 실질적인 요금 이용자에게 환급



□ 재원집행 : 실사용액을 한도내의 금액 범위에서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지원(분기별)

② 65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65세부터 인지능력이 현격한 감소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고로 인한 사망률까지 증가하고 있음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필요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TAAS 2019년 교통 사고정보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고령자 사고건수 40,645건 중 1,523명 사망, 44,390명 부상을 당하며, 최근 5년간 고령자 교통사고 추세가 '18년 대비 '19년에 1,998명 증가하여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임**

▶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절실

- ▶ ○○시와 00도는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노인보호구역 확대 개선사업, 고령자 친화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통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에 매진하고 있으며
- ▶ 이와 연계하여 코로나19로 고령층 삶의 질이 저하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출처 :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경찰청, 2019년)

□ 사업대상자 현황

(단위 : 명, '21. 08월 기준)

구 분	연도별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25,390	26,546	27,702	28,858	30,014	순증 1,156
65세 이상 노인	25,390	26,546	27,702	28,858	30,014	순증 1,156

□ 추정소요 예산액

- 산출기초 : 2,107명(노인인구 25,390명의 버스이용율(8.3%))×40,000원×4회

[분기별 40,000원, 연간 160,000원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337	352	368	383	399	
65세 이상 노인	337	352	368	383	399	

③ ○○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교통 지원 사업(안)

구 분	적용대상	할인율	시행	비고
시민	1. 만 65세 이상 ○○시 2. 거주자	100/100, 연간 16만원 한도, 초과분 자부담	'22. 12월	신설

##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본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없으며,
- 본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도내 다른 제도의 예산변경사항 '없음'
- 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 지방비 매칭 등에 '부정적 영향 없음'

### ②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

#### ○ 재정자립도

- 2021년 ○○시 재정자립도는 23.1%임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E)
23.1 (24.2)	642,368 (642,368)	148,481 (155,459)	486,909 (486,909)	0 (0)	6,978 (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 재정자주도

- 2021년 ○○시 재정자주도는 67.6%임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자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7.6 (68.7)	642,368 (642,368)	434,280 (434,287)	201,110 (201,110)	0 (0)	6,978 (0)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 ▶ 자주자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사회보장 예산

- 2021년 ○○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액은 202,862백만원으로 총예산(일반+기타) 715,303백만원의 28.4%임

(단위 : %, 백만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23.1(24.2)%	67.6(68.7)%	715,303	202,862	28.4%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여부, 거주기간 등 확인
  - 지원방법 : 교통카드 발급으로 시내버스 이용
    - 교통카드 태그로 이용객의 실제적인 사용금액 정산(분기별)
  - 관내구간 사용 교통카드 시스템 관련 서버·프로그램 구축
    - 카드 신청·접수, 교통카드 발급, 사후관리, 정산 및 통계자료 등
    - 카드 발급에 따른 대상자 인적사항 관리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사전동의 후 정보 수집 이용
    - 교통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버스 내 음성인식 및 분기별 자료 업로드
      - ※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분기별 사망·전출자에 대한 자료 업로드
- 사업대상 및 사망·전출자 단순 현황 시스템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비효율 등 문제는 별도 없음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재원조달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
대상자	25,390	26,546	27,702	28,858	30,014	
총예산	337	352	368	383	399	1,839.0
-						0
시군비	337	352	368	383	399	1,839

\* 출처 : ○○시 인구통계(2021. 8월기준)

\* 산출기초 :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율 + 버스이용율(8.3%) 적용

- 재정의 지속가능성 : 가능
  - ○○시 65세 이상 노인 .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예정)
- 정책의 지속가능성 : 가능
  -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생활안정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양극화 문제, 복지사각 지대 해소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적극 추진

## 7.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지역 주민 간담회 및 관련 이해 대표자 회의 5차례 실시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및 제도 설계 시 반영
- 제○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노인 삶의 질 향상 성과 지표 등 관리

## 8. 사후 성과관리 계획

- 교통카드 신청률(신청자 수 대비 사업 대상자 수), 대중교통 이용률, 대중교통 이동편의 만족도 등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매년 실시 후 차기년도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등에 반영

연도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치	20%	40%	60%	80%	90%

- 지역연구원 연구용역 계약 체결 후 교통비 지원 사업 성과평가 실시

[붙임] ○○시 교통이용량 조사 통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각1부.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 협의요청서 작성 방법의 이해를 돕고자, 지자체 사업 중 일부내용을 수정·편집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작성 이해 목적 외 사용금지(예, 동일내용의 사업을 그대로 작성하여 사업 요청 불가)

**(변경) 취약계층 암검진 바우처 지원**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변경</b> (변경이력: 1회) *변경보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000(2018.11.30.)	
근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법령</b> (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checked="" type="checkbox"/> <b>건강의료</b>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저소득</b>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보건(090)</b> (세부항목/코드: 보건의료 091)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자격</b> (국가암검진대상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소득</b> (의료급여수급권자)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인적</b> (국가암검진 연령, 성별 기준)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b>기타</b> (해당 검진비 검진기관 지급)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연간</b>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횟수	<b>총 1회</b> (국가암 검진주기에 따라 위암 2년, 대장암 1년, 유방암 2년 주기)
전달 체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보건소</b>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보건소</b>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보건소</b>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보건소</b>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보건소</b>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복지 자원	주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 <span style="float: right;">비율 100%</span>
	부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 <span style="float: right;">비율__%</span>
지원규모	총 9,500명/16개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b>활용</b>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자격확인</b>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역사회보장계획포함 여부	<input type="checkbox"/> 포함 (추진전략번호: 사업번호: , 중점사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비해당</b> (지역보건의료계획 포함)	

##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변경 협의 완료 후 즉시 / 2021.4.					
제도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 제2021-104호에 의거 위·대장 진정(수면) 내시경, 유방초음파 일부 행위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수가 적용 시행됨. (※ 고시에 따른 수가적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검진 목적일 경우는 기존대로 비급여임)</li> <li>이로 인해 야기되는 중복지원 문제해결을 위해 변경 신청함</li> </ul>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관리법 제3조, 제11조, 제46조</li> <li>의료급여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li> </ul>					
사업목적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국가암 수검율이 낮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국가암검진에서 지원하지 않는 <b>비급여항목</b>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건강증진 및 의료형평성 제고</li> </ul>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국가암 수검율이 낮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국가암검진에서 지원하지 않는 <b>비급여항목 등을</b>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건강증진 및 의료형평성 제고</li> </ul>				
성과지표		이전	가. 성과지표명: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 수검률, 암사망률 나. 성과목표치				
			구분	2018(*사업시작)	2019	2020	2021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 수검률(%)	29.99	30.10	25.59	30.10 (*19년도 수검률 회복)
	암사망률(연령표준화)	100	100	100	100		
		이후	이전과 상동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선정대상자로 위암 1차 검진 대상자,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li> </ul>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전과 동일</li> </ul>				
	대상규모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5,373		9,161		9,125
		이후	2021년	2022년	2023년	2025년	2026년
		9,500	9,600	9,700	9,800	9,900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급여수급권자 위암, 대장암, 유방암 국가암검진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비용 정액 지원</li> </ul>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급여수급권자 위암, 대장암, 유방암 국가암검진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비용 정액 지원 또는 급여청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li> </ul>				
	지원수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진 암종별 국가암검진 주기에 따라 연 1회</li> <li>위·대장암 진정(수면)내시경 각 5만원 정액지원, 유방암초음파 8만원 정액지원</li> </ul>				

구 분		주요 내용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 암종별 국가암검진 주기에 따라 연 1회</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대장암 수면내시경 비급여 비용 각 5만원 정액지원 또는 급여청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li> <li>▶ 유방암초음파 비급여 비용 8만원 정액지원 또는 급여청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li> </ul> </li> </ul>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방문 → 검진기관 검진실시(신분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대상자 여부 조회) → 검진기관 결과통보(대상자) 및 검진비용 청구(보건소) → 보건소 검진기관으로 검진비지급</li> </ul>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과 동일</li> </ul>					
	수행기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개 구(군) 보건소</li> </ul>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과 동일</li> </ul>					
소요 자원 (천원)	총 규모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42,000		460,000		500,000	
		이후	2021년	2022년	2023년	2025년	2026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재원별 규모	이전	시비 100%					
		이후	시비 100%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자격 및 검진대상 확인						
	연계 방안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국가암검진 시스템 연계						

### 3. 사업의 타당성

####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17.~)로 암검진 비급여 항목 일부가 급여화\* 됨. 의료행위별 급여 청구된 검진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지원대로 정액지원을 유지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대상에 동시에 중복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함.
- 단, 급여 청구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순수 건강검진 목적일 경우는 기존처럼 전액 비급여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내용을 변경하여 같은 대상자에게 **국가 기관 간 예산이 중복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또한 급여청구가 가능한 항목 중 의료급여 종별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항목에서 완전 제외할 경우 민원발생 및 저소득층의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비용부담으로 암검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통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한다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이 어려워짐

#### ▷ 변경 협의 내용

변경 (전)	지원 내용	▶ 위·대장암 진정(수면)내시경 각 5만원 정액지원, 유방암초음파 8만원 정액지원 ※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비용지원이 없는 항목으로 범위 한정하고 항목별 지원 상한액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000(2018.11.30.)호에 의거 신규사업 신청 시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으로 변경보완 승인된 사항임
	지원 연령	▶ 만 50세, 만 60세
변경 (후)	지원 내용	▶ 위·대장암 수면내시경 비급여 비용 각 5만원 정액지원 또는 <b>급여 청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b> ▶ 유방암초음파 비급여 비용 8만원 정액지원 또는 <b>급여 청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b> ※ 본인부담금 범위는 수면내시경, 유방초음파 검진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으로 한정함. ※ 유방암의 경우 '18.~'20. 사업 추진결과 연평균 280명 정도로 지원규모가 적고, 암검진 후 유소견(유방암의심, 판정유보)일 경우 급여청구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21년 지급액이 크게 감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21년 사업 추진 결과 평가 후 사업 축소 또는 확대 고려 예정
	지원 연령	▶ 위암 만 40 이상, 대장암 만 50세 이상, 유방암 만 40세 이상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7249(2017.11.27.)호에 의거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비용지원이 없는 항목으로 범위 한정하고 항목별 지원 상한액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라는 사회보장 변경보완 기승인 건을 국가암검진대상자로 광의 해석하여 대상연령을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 지침에 있는 연령 기준으로 정함. 또한 만50세, 만60세로 한정할 경우 사업 대상자가 너무 적어 사업추진이 어려움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암검진 비급여 항목 일부 급여화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구분	해당 고시	급여수가 대상범위
위암, 대장암 진정(수면)내시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질환자 중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 및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li> <li>▪ 그 외의 환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 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li> </ul>
유방초음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 적용함</li> </ul>

● 사업목적과 성과

▷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검진 및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국가암검진 대상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 시 90% 이상 완치되며, 조기 치료개입으로 암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이득이 큼.

따라서 저소득층에 국가암검진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함.

▷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여전히 수검률이 낮은 수준이나 '18년도 사업 시작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률 향상됨('17년도 28.87%, 특·광역 시도 중 7위 → '19년도 30.10%, 특광역시도 중 5위)

② 지역의 특수성

● 2017년 신설 협의 시 지역 여건과 변동사항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이 '15년도 4.3%에서 '19년도 5.05%로 증가했으며, ○○은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로 사업대상 규모는 향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신설 협의 시 지역특수성

- 2015년 기준으로 수급자 비율은 전체인구의 3.2%인데 비해 ○○시는 4.3%로 전국 및 서울과 비교해 수급자 비율이 높으며 15만 2천명 정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음(○○형 기초보장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6년)
- ○○시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중에서 지난 1년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14.6%로 나타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병에 걸린 가구원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9.7%로 나타나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의료이용 및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겪고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맞춤형 기초보장제도 도입방안 연구: ○○복지개발원, 201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구분	수급자 수(A)	총 인구수(B)	수급자 비율(A*100/B)	비고 (순위)
전국	1,881,537	51,849,861	3.63	
세종시특별자치시	5,749	340,575	1.69	8
울산광역시	26,594	1,148,019	2.32	7
서울특별시	317,269	9,729,107	3.26	6
대전광역시	59,317	1,474,870	4.02	5
인천광역시	122,027	2,957,026	4.13	4
대구광역시	117,594	2,438,031	4.82	3
<b>○○광역시</b>	<b>172,439</b>	<b>3,413,841</b>	<b>5.05</b>	<b>2</b>
광주광역시	76,193	1,456,468	5.23	1

※ 통계청 201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9

● 암발생률 및 사망률 현황

- ⇒ ○○은 암사망률이 높아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 조기발견 조기치료 유도로 암사망률 제고 필요
- ▷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전국 37.4%, ○○ 39.0%)이 높으며(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센터 2020), **암 사망률(전국 89.0, ○○ 98.4)도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음(통계청 2020)**
- ▷ 2018년도 ○○지역 연령표준화 암 발생률(309.6명)은 전국(290.1명)보다 높음 (중앙암등록본부 2020)
- ▷ 2019년도 ○○지역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98.4명)은 전국(89.0명) 보다 높음 (통계청 2020)

#### 4. 기존제도와와의 관계

#####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국가사업 간 암검진비 지원 유사·중복문제 해결 ⇨ 암검진 비급여 항목 일부가 급여화

##### ▷ 타법령

##### ① 위·대장 진정(수면)내시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5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 2020.6.24.)」에 의한 개정·발령

##### ② 유방초음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4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2021.3.30.)」에 의한 개정·발령

- 국가사업 중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비용지원이 없는 항목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음
- 단, ○○○○에서 ○○시 본사업과 동일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 동일하나 두 지역 간 대상자 중복 등 연관된 문제 없음.

#####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현재 국가사업으로 취약계층 일반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검진비 추가 부담 등 경제적 사정으로 검진을 기피함
-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비용지원이 없는 항목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의료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① 대상자 선정기준 적정성

#### ● 대상자 선정기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수검 선정대상자로 아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50세, 만 60세</li> <li>- 위암 1차 검진대상자</li> </ul> </li> <li>대장암,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수검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로 아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암 만 40 이상, 대장암 만 50세 이상, 유방암 만 40세 이상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li> <li>- 위암 1차 검진대상자, 대장암,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li> </ul> </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암검진에서 발생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대장내시경 진정(수면) 비급여 비용 각 5만원 정액지원</li> <li>- 유방초음파 비급여 비용 8만원 정액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암검진에서 발생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대장암 내시경 진정(수면) 비급여 비용 각 5만원 정액지원 또는 <b>급여 청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b></li> <li>- 유방암초음파 비급여 비용 8만원 정액지원 또는 <b>급여 청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b></li> </ul> </li> </ul>

#### ● 대상자 선정기준 적정성

- ▷ ○○시 암관리 빅데이터 분석결과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상자 중 저소득층이 포함되면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암수검률 또한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낮게 나와 암검진 우선관리대상으로 집중지원 필요.

#### ▷ 암종별 검진율

(단위 : %)

구 분	2020년(A)			2019년(B)			증감률(A-B)			비 고 (분석)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계	39.23	40.79	25.59	39.39	40.39	30.10	-0.16	0.4	-4.51	1. 2019년 대비 <b>0.16%P 감소</b> 2. 건강보험 0.4%P 증가한 반면, 의료급여 4.51%P 감소함
위 암	45.09	46.54	32.74	44.19	45.05	35.84	0.9	1.49	-3.1	
대장암	27.62	29.10	16.78	29.56	30.46	22.40	-1.94	-1.36	-5.62	
간 암	64.90	68.64	47.59	63.93	65.99	53.72	0.97	2.65	-6.13	
유방암	48.69	50.70	31.73	48.85	50.12	36.86	-0.16	0.58	-5.13	
자궁암	44.06	45.20	32.76	42.20	43.13	30.82	1.86	2.07	1.94	
폐암	25.54	25.78	23.40	22.53	22.60	21.74	3.01	3.18	1.66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3월 말 기준)

- ▷ 일반적으로 국가암검진사업 위·대장내시경 검사방법에 대한 거부감이 크며 저소득층의 경우 통증 없이 검사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진정(수면) 비급여비용 부담으로 검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국가암검진에서 발생하지 않는 비급여비용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5대 국가암 수검을 용이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암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함.
- ▷ 유방초음파의 경우 1차 검진 유소견 검사결과가 나올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대부분 급여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급여 1·2종에 따라 검진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21년도 사업추진 후 결과 분석을 통해 유방초음파 지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국가암 비급여 비용 지원 확대 등 대상자 기준 등 지원범위 축소 또는 확대 변경 예정

##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국가암검진 수검독려 전달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며, 2018년부터 운영한 결과 과부하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미비함.
- 또한 ○○시는 각 구(군) 보건소당 1명의 암홍보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암검진사업의 자체사업 추진시 업무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전달체계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방문) 건강검진표, 신분증(의료급여증) 지참



(검진기관 검진실시) 건강검진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 ※ 건강검진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분실 등)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재발급
- ※ 검진대상자가 여러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검사를 중복하여 받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에서 확인



(검진기관 결과통보)

- 암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 후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
- ※ 검진기관은 암검진 결과통보서 미수령에 따른 추가 요청 시 즉시 송부
  - ※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국가 암 검진사업 안내 서식 활용

**(검진기와 검진비용 청구)**

- **청구기간:** 검진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청구마감 기한: 익년도 1월 31일까지)
  - '21년 이전 미청구 검진비 청구 유예기간 '21. 7월까지 운영, 유예기간 이후 청구 건은 지급불가
- **청구방법:** <서식-2> 작성 후 필요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위·대장 수면내시경 동시 시행 시 1회로 청구
  - 암 검진 결과 기록지: 수면내시경 및 유방초음파 진료 기록 반드시 기재 또는 수면내시경을 시행한 관련 서류 첨부(급여청구한 경우 진료상세내역서, 영수증 등 추가서류 제출)
    - ※ 유방암 초음파의 경우,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유방암의심, 판정유보) 의견을 반드시 첨부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

**(보건소 검진비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검진기관 계좌입금

- 의료기관에서 급여처리 후 실 발생비용을 청구한 경우 진료상세내역서 등 추가서류 검토 후 지급
- 검진결과를 반드시 확인 → 급여청구 항목에 해당되나 전액 비급여로 청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후 지급(\*중복지원 불가)
-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청구 기간 자체적으로 조정
- 당해연도 미지급 검진비는 차기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②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본 사업은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국가차원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음
- 2018년 신규사업 도입 이후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규모에 따라 추가 확보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단위 : %, 억원)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보건* 예산(b)	보건*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45.27	56.55	97,088	1,654	1.7	0.3

## 7.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사업계획 및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중

- 제7기 3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내
  - 2.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 ② 만성질환 평생 관리체계 구축
  - ②-2. 암관리사업 → 취약계층 건강형평성제고를 위한 시 특화사업 추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지원)

### ② 저소득층의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비용부담으로 암검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통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

## 8. 사후 성과관리 계획

### ① 성과지표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 수검률 향상(건강보험가입자와 격차 해소)
  - ⇒ 궁극적 목표: 암사망률 감소

### ● 성과목표치

구분	2018(*사업시작)	2019	2020	2021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 수검률(%)	29.99	30.10	25.59	30.10 (*19년도 수검률 회복)
암사망률 (연령표준화)	100	100	100	100

## 9. 참고자료

### ① [붙임] 2021년 국가암관리사업 총괄 계획

【부록 6】

**정책영역별 대표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별 세부지표 예시**

대분류	소분류	대표 성과지표	자료 출처	사업내용	지표
돌봄	영아 (출산)	- 합계 출산율	통계청 인구조사	영아 출산지원 (의료, 현금,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인구증가율(시도/시/군/구)
		영아 돌봄 및 보육관련			영아(만 0~2세) 보육서비스 총족률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아동 (보육)	- 유아/아동 돌봄서비스 수혜비율 - 1인당 돌봄 프로그램 비율 및 서비스 인원 수	지역사회보장 지표	질병 예방	영유아 완전 접종률
					만 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률
				돌봄 서비스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시도/시/군/구)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우수사례 (정성평가)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보육교사 이직률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청소년 계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달성률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나홀로 아동' 비율				
장애 아동 관리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총족률				
성인 (요양)	- 장애인/노인 인구 돌봄 서비스 수혜비율	지역사회보장 지표	복지영역 확대	신규수급자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대분류	소분류	대표 성과지표	자료 출처	사업내용	지표
		- 1인당 요양 기관 및 서비스 인원 수		장애 돌봄	자활참여자 성공률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노인돌봄	독거노인 보호율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노인 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률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 등록관리율
고용	안전망	-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보험가입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수(시도)
	취업	- 취업률 / 고용률	지역사회보장 지표	취업률	구직급여 신청자수(시도) (하향지표)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자치단체 자체사업)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및 고용률 달성도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이행률 장애인 취업률 실직 중장년 재취업률
			취업 제도 및 프로그램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율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I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률·모집률 고용복지+센터 연계서비스 활성화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율	

대분류	소분류	대표 성과지표	자료 출처	사업내용	지표
				고용률(기업지원)	사회적기업 고용률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중소기업, 제조업 고용률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노인 일자리 사업 (재)참여율
교육	유초 중교	- 기초학력미달 비율, 학업 중단율	교육부 학업성취도 결과 지역사회보장 지표	인프라	학급당 학생수(시도/시/군/구)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수 (시도/시/군/구)
				학업률 개선	고등학교 학업중단율(하향지표)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시도)
	고등 교육	- 대학 진학률 / 졸업률 / 취업률	한국교육 개발원 교육통계분석 자료	청년 삶의 질 개선	청년실업률(시도) (하향지표)
	평생 교육	- 1인당 평생 학습 프로그램 수	지역사회 보장지표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학습 참여율
소득 빈곤	소득 지원	- 소득증가율, GRDP 개선율, 상대 빈곤율, 지니 계수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소득	주관적소득수준(시도)
					1인당 지역총소득(시도)
					1인당 개인소득(시도)
연금	- 1인당 연금 가입률 / 수혜액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연금	기초연금 신청률 및 지급률	
건강	신체	- 시군구 별 기대 수명 / 건강 수명	건강형평성 학회 건강격차 조사, 통계청 인구표	수명	기대여명(시도)
				건강 관리 지표	규칙적 운동 실천율(시도)
					비만율(시도/시/군/구)
					흡연율(시도/시/군/구)
					음주율(시도/시/군/구)
	고위험음주율(시도/시/군/구)				
	- 질병유병률 (2주간 질병 상태 경험자)	통계청 사회조사	건강	주관적 건강수준인지율(시도/시/군/구)	
정신	- 인구 천명당 우울증 경험율	질본 국민 건강 통계,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인지율(시도/시/군/구) (하향지표)	

대분류	소분류	대표 성과지표	자료 출처	사업내용	지표
		및 자살자 수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살률	인구십만명당 자살률(시도/시/군/구) (하향지표)
주거	주거 안정	- 인구 천 명당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자료	주거 면적	건축허가면적증감률(시도) 주택보급률(시도)
				주거 비용	아파트매매가격지수(시도/시/군/구)
					아파트전세가격지수(시도/시/군/구) 아파트월세가격지수(시도/시/군/구)
	주거 환경	- 1인당 주거 면적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	주거환경 현황	1인당 도시지역면적 현황 (시도/시/군/구)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시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거환경 인식	주거비 부담 인식률 주거환경 불만 인식률 생활환경 불만 인식률
문화 여가	문화 예술	- 문화예술 관람율 / 참여율	문체부 국민여가 활동 조사	문화 인프라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시도/시/군/구)
				문화 프로그램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통합문화 이용권 집행률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및 인지율
				직장 문화 개선(지역)	지자체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
				문화재 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체육	체육	- 스포츠 관람율 / 생활체육 참여율	문체부 국민생활체육 조사	스포츠 인프라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수(시도)
				스포츠 참여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현황(시도)
					기타
	여가 관광	- 평균여가 시간	문체부 국민여가활동 조사	여가 확대	해외여행경험 및 횟수(시도)
		- 1년간 여행자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보호안전		- 범죄율	검찰청 범죄통계연보	보호안전관리 인프라 역량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시도)

대분류	소분류	대표 성과지표	자료 출처	사업내용	지표
					119안전센터 1개 센터당 담당주민수(시도)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수(시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시도)
					소방서 1개서당 담당주민수(시도)
				범죄건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등록 관리율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시도)
				사고율 / 사망률	소년 천명당 소년범죄발생건수(시도)
					어린이 사고 사망률
					아동 십만명당 안전사고사망률(시도)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질병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증감률
					식중독 저감률 및 원인 규명률
				투입 예산	암검진 수검률 및 향상률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안전 교육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시도)				
- 학대 아동/노인 발견률	지역사회보장 지표	학대 아동/노인 관리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		
환경	- 연평균 미세 먼지 농도	환경부 대기환경 연보	대기	단위인구 당 안전신고율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 검사율	
			환경오염 관리	친환경자동차 확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환경오염 실태	공무원 1인당 환경오염물질 관리사업장 수			
		환경오염 불만 인식률			
- 1인당 녹지/공원 면적	지역사회보장 지표	녹지면적	녹지환경 만족도(시도)		
기타	혼인률	통계청 사회조사	-	-	

#### 협의제도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자료 활용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 검색 및 활용  
(메인화면 → 전체메뉴 → 사회보장정보 → 자료실 → 발간물)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sc.go.kr/>